

세법연구 14-01

주요국의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연구

2014. 9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안 종 석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은 주 전문연구원

정 경 화 전문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	9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9
가. 상속세	9
나. 증여세	13
2.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16
가. 가업상속공제	17
나.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저율과세	25
다. 연부연납제도	30
3.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정연혁	30
III. 주요국의 가업상속 과세특례 현황	36
1. 일본	36
가. 가업상속 과세특례	36
나. 가업상속 과세특례 관련 개정 및 논의	41
2. 독일	46
가. 가업상속 과세특례	46
나. 가업상속 과세특례 관련 개정 및 논의	49
3. 영국	52
가. 가업상속 과세특례	52
나. 가업상속 세제지원 관련 개정 및 논의	56
4. 미국	57

가. 가업상속 과세특례	57
나. 가업상속 과세특례 관련 개정 및 논의	62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65
1. 가업상속 과세특례 적용 요건	65
2. 가업상속 재산의 범위 및 공제금액	68
3. 사후관리 요건	71
참고문헌	74
부록	76
〈부록 1〉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체계	76
〈부록 2〉 주요 자본이득세 운영국가의 과세 현황	101

표 목 차

〈표 II-1〉 상속세 과세체계	10
〈표 II-2〉 상속공제의 종류	12
〈표 II-3〉 상속세 세율	13
〈표 II-4〉 증여재산공제의 종류	14
〈표 II-5〉 증여세 과세체계	15
〈표 II-6〉 증여세 세율	16
〈표 II-7〉 기업상속공제 한도액 개정연혁	32
〈표 II-8〉 기업상속 공제 실적	33
〈표 II-9〉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의 개정연혁	33
〈표 II-10〉 피상속인의 요건 개정연혁	34
〈표 II-11〉 주식보유비율 요건 개정연혁	35
〈표 II-12〉 고용유지 요건 개정연혁	35
〈표 III-1〉 중소기업자의 범위	37
〈표 III-2〉 독일의 기업상속공제(사업자산공제) 연혁 및 주요 내용	50
〈표 III-3〉 자산 유형별 공제율	55
〈표 III-4〉 주식 유형별 공제율 개정연혁	57
〈표 III-5〉 미국의 유산증여세 연혁	62
〈표 IV-1〉 기업상속 과세특례 적용 요건	66
〈표 IV-2〉 기업상속 재산의 범위 및 공제금액	69
〈표 IV-3〉 기업상속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72

I. 서론

-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가업상속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은 부모의 재산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창업하는 자와 사업을 승계하는 자 간에 기회의 균등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고 상속인의 경영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산의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통해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다면, 기업이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고 고용이 유지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임

-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1997년 도입되었지만, 도입 당시부터 2007년까지는 1억원을 한도로 공제가 인정되었으므로 지원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 2008년에 들어서 한도 금액 30억원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한도액 수준을 크게 인상하였으나 이후에도 공제율 및 한도 금액의 상향 조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업계의 요청과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지원 규모는 계속 증가하였고 2014.1.1. 이후부터는 가업상속재산의 100%까지 한도 최고금액 500억원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음
 - 공제율과 한도금액만 증가한 것이 아니고 제도의 적용 범위도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음
 -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란 전체 중견기업 2,505개 기업 중 약 78%에

달하는 수준이므로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적용범위에 포함이 되는 상황임

- 이와 같이 단기간에 공제규모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지원규모 및 적용대상의 확대도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2011년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속세 등 비용문제가 가업승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4.3%로 나타났음
 - 또한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승계와 관련한 과중한 조세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1%로 가장 높음
 -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전히 상속·증여세 납부를 과중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부는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그리고 기업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소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선방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그동안의 지원효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개선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가업상속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
 - 따라서 외국의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제도와 비교를 통해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를 소개한 후 제Ⅳ장에서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 조사대상국은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이고 상속세는 없지만 자본이득세로 자산의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부록〉에서 소개함

Ⅱ.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¹⁾

- 우리나라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이고 증여세란 생전에 발생한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임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고 증여세는 취득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음
 - 유산세 과세방식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자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므로 유산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
 - 취득세 과세방식이란 유산을 취득한 자를 기준으로 각자 취득한 유산가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과세방식임
 - 즉,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분할하고 각 상속인별 과세대상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함

가. 상속세

-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유산이 상속, 유증, 사인증여의 형태로 무상이전되는 경우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임

- 상속세의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짐

1)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는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2014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함
-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가액과 공과금, 장례비, 채무 금액을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임²⁾
 -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수수료 및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임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할증세액, 세액공제 및 연부연납 등을 고려하면 납부할 세액이 산출됨

〈표 II -1〉 상속세 과세체계

상속재산(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 과세제외 재산(비과세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 등(각종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상속 할증세액
결정세액
- 각종 세액공제
(신고) 결정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총 결정세액
- 연부연납, 물납 자진납부(분납)세액
고지세액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2, p. 146

2) 2013.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이를 0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음(-)의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해야 함(대법2006두 9207, 2006.9.22)

-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 외에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도 포함함
 - 간주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포함됨
 -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
 - 재산종류별로 1년내 2억원 이상, 2년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과세 제외되는 재산은 국가 및 공공단체 등에 유증을 한 재산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 등임

-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시 생전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즉,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이전함으로써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³⁾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
 - 다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은 합산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정상세율로 과세함⁴⁾
 - 또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음⁵⁾

- 상속공제의 종류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음

3) 현재2005헌가4, 2006.7.27

4) 조특법 제30조의5, 조특법 제30조의6

5) 조특법 제71조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공제가능한 상속공제액은 상속공제 합계액과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중 적은 금액임
 - 공제가능한 상속공제액 = Min[상속공제 합계액,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의 상속 포기 후 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된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금액인 2억원과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중 적은 금액임

〈표 II-2〉 상속공제의 종류

항목		상속공제액	한도
기초공제	기초공제	2억원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 × 100%(2014년 이후)	200~500억원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금액이 5억원 이상	Min(①,②) 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②상속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분	30억원
	상속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	5억원	최소 5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자녀 수 × 1인당 3천만원	인원 수 제한 없음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 수 × 500만원 × 20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연로자 수 × 1인당 3천만원	
	장애자공제	장애인 수 × 1인당 5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¹⁾		Max[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5억원
금융재산 공제	순금융재산가액 ²⁾ 2천만원 초과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 20%)	2억원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미만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멸실·훼손시 당해 손실가액	한도 없음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가액의 40%	5억원

주: 1)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선택하여 적용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 안됨, 기한내 무신고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함

2)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 - 금융채무

자료: 국세청(2014), p. 142

-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10~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할증과세액을 가산함

〈표 II-3〉 상속세 세율

(단위: 억원, %)

1995.1.1. ~ 1996.12.31. 상속분		1997.1.1. ~ 1999.12.31. 상속분		2000.1.1. 이후 상속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5 이하	10	1 이하	10	1 이하	10
0.5 ~ 2.5	20	1 ~ 5	20	1 ~ 5	20
2.5 ~ 5.5	30	5 ~ 10	30	5 ~ 10	30
5.5 초과	40	10 ~ 50	40	10 ~ 30	40
		50 초과	45	30 초과	50

- 신고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 세액공제에는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이 있음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나. 증여세

- 상증법상 증여의 개념은 생전에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하거나 현저하게 저가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함⁶⁾
-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수증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대상이 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임

6) 2003.12.31 이전에는 상증법에서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4.1.1 이후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증여 개념을 신설하였음

- 증여재산공제에는 인적공제와 재해손실공제가 있음
- 인적공제의 경우, 2013.12.31. 이전에는 증여자에 대해 1인당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의 공제를 허용하였으나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제금액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인상하였음

〈표 II-4〉 증여재산공제의 종류

증여자		공제 금액
인적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직계비속	3천만원
	기타친족 ¹⁾	500만원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내의 재해 등으로 멸실·훼손된 손실가액

주: 1) 직계존비속 외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금액과 과세가액 불산입 금액,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차감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계산함⁷⁾
- 과세가액 불산입 금액은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및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임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함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표 II -5〉 증여세 과세체계

증여재산(본래의 증여재산, 증여의제 재산)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비과세 및 불산입 재산)	
- 채무부담액	
<hr/>	
증여세과세가액	
+ 10년 이내 재차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등(인적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hr/>	
증여세과세표준	
× 세율	
<hr/>	
산출세액	
+ 세대생략 증여 할증세액	
- 조특법상 면제세액 등(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세액공제(기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hr/>	
결정세액	

자료: 기획재정부(2012), p. 151

-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재산에 따라 기본세율과 특례세율로 구분됨
 - 기본세율은 10%에서 50%까지의 초과누진 세율구조이며, 특례세율이란 조세특례 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창업자금⁸⁾ 및 기업승계 중소기업주식⁹⁾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1996.12.31. 이전에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달리 적용하였으나 1997.1.1. 이후 부터는 동일한 세율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세대생략 증여 할증세액으로서 가산함
- 자경농민인 증여자가¹⁰⁾ 2007.1.1. 이후에 영농자녀¹¹⁾인 수증자에게 2014.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100% 감면함

8) 조특법 제30조의5

9) 조특법 제30조의6

10)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임

11) 영농자녀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으로 영농·임업 후계자이거나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임

〈표 II-6〉 증여세 세율

(단위: 억원, %)

1995.1.1~1996.12.31. 상속분		1997.1.1. ~ 1999.12.31. 상속분		2000.1.1. 이후 상속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2 이하	10	1 이하	10	1 이하	10
0.2 ~ 1.5	20	1 ~ 5	20	1 ~ 5	20
1.5 ~ 3	30	5 ~ 10	30	5 ~ 10	30
3 초과	40	10 ~ 50	40	10 ~ 30	40
		50 초과	45	30 초과	50

2.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상속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써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 및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규정을 두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및 가업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하였고 도입 이후 수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음
- 증여세 저율과세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 등(30억원 한도)을 증여받은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임
 -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는 시점에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함
- 가업상속재산은 일반 상속재산보다 연납기간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연납이 허용되나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12년까지 연납이 가능함

가. 가업상속공제

1) 적용요건

가) 기업의 요건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조특법」 제5조 제1항의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¹²⁾이어야 함
 - 「조특법」 제5조 제1항의 중소기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미만,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임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

12)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재산세과-335, 2012.9.20)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함(재산세과-1135, 2012.9.20)

- 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 업종기준 적용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업종인 농업·양축업, 어업·임업은 제외함
-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영농상속공제¹³⁾를 적용받는 업종인 농업·양축업·어업·임업은 제외함
-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
- 중소기업 졸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¹⁴⁾
 -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

13) 영농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농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2년간 영농에 종사한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영농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4)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은 30%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에 한함

나) 피상속인의 요건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① 거주자로서 ② 피상속인의 계속사업 경영기간과 ③ 대표이사의 재직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④ 최대주주 1인에 한해 적용가능함
 - 피상속인의 계속사업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2014.2.21. 이후 상속분부터는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함
 - 기업기간 중 10년 이상(사전 승계의 경우)
 - 전체 사업영위기간의 50% 이상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 2014.2.21. 이후부터 추가된 요건으로서 기업기간 중 10년 이상 재직요건이 추가되었음
 - 이는 질병 등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임
 -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면 기업상속공제를 허용함
 -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개인은 대표자)가 아닌 경우라도 가업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영위하였다면 기업상속공제가 가능함

다) 상속인의 요건

- 상속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천재지변이나 인재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함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④ 상속인 1인이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유류분¹⁵⁾ 제외)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기 ①~③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봄

2) 대상 자산

기업상속 재산이란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음의 상속재산에서 유류분 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의미함¹⁶⁾

○ 개인으로서의 기업은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임

○ 법인으로서의 기업은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임

- 2012.2.2.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기업해당 주식 등에서 사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한 지분을 공제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기업상속공제} = \frac{\text{피상속인의 보유주식 평가액}}{\text{평가액}} \times \frac{(\text{총자산가액} - \text{사업무관자산})}{\text{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임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비사업용 토지 등)

15) 민법상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부분, 2014.2.21. 상속개시분부터 유류분은 제외함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 과다보유현금
 -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함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3) 공제 금액

- 2014.1.1. 이후 상속개시분의 기업상속공제 금액은 기업상속재산가액의 100%이며 제도의 도입 이후 공제율이 꾸준히 증가되었음
 - 2008.1.1.~2008.12.31. 상속개시분의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의 20%
 - 2009.1.1.~2011.12.31. 상속개시분의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의 40%
 - 2012.1.1.~2013.12.31. 상속개시분의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의 70%
 - 2013.12.31. 이전까지는 기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사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였음
- 2014.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기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지만 한도금액을 설정하고 있어 한도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제한됨
 - 한도금액은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음
 -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00억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임

4)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요건과 추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에서 정하는 사후관리 사항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¹⁷⁾
 -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¹⁸⁾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지켜야 할 요건은 가업유지 의무와 고용확대 의무가 있음
 - 가업유지 의무에 따르면 상속 후 10년간 가업을 유지하면서 가업용 자산¹⁹⁾의 20%(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하지 않고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등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고용확대 의무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을 기준연도의 80% 이상(매년 판단)으로 유지하면서 10년간 평균을 1.0배 이상(10년 후에 판단)으로 유지하여야 함
 -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년간 평균 1.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기준연도는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으로 함

- 2013.12.31. 이전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가업상속공제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추징세액을 차등

17)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추징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징세과-1184, 2010.12.29)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내지 제11항

19) “가업용 자산”이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가업상속재산을 의미하고 법인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과자산 제외)을 의미함

적용합

-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이 7년 미만인 경우 100% 추정하고 7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에는 90%, 8년 이상 9년 미만인 경우 80%, 9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70%를 추정함

□ 추정사유별로 요건 충족기간을 달리 산정하고 있음

- 해당 기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요건 충족기간으로 산정함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 사업연도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요건 충족기간으로 산정함
- 상속 개시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또는 1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 사업연도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각각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또는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요건 충족기간으로 산정함

□ 기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는 10%) 이상을 처분하였지만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상속세를 추정하지 않음

- 기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기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기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기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조직 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이전된 기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내용연수가 지난 기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지만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음
 -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었지만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음
 -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에 의해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조직 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 유상증자를 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지분율이 낮아졌으나 상속인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경우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나)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 종전까지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음
 -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억원에 취득한 주식이 피상속인 사망시 시가 100억원으로 증가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70억원을 공제받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150억원

에 양도하면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50억원이 되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
 - 즉,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음²⁰⁾
 - 따라서 상속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중 양도차익도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 위의 예에서 양도차익은 149억원이 됨

나. 기업승계 주식 증여세 저율과세

-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 적용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1.1. 이후부터 도입되었음
 - 도입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었으나 이후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증여세 저율과세 대상 기업도 확대되었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음

1) 적용 요건과 대상자산

-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함
-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20) 소득세법 97의2 ④, ⑤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함

- 2010.12.31. 이전에는 최대주주 등의 각각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었으나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수증자 1인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적용함

- 증여한 주식 등의 발행 법인은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조특법」에 의한 중소기업이거나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함
 - 증여자가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10년간 계속하여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상장·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30%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함²¹⁾
 - 단,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은 제외함

2) 대상자산과 과세특례 내용

- 대상자산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함

가)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함²²⁾
 -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인 가업승계 주식 등 외의 증여재산 가액은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²³⁾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1) 2010.12.31. 이전은 40%의 지분율을 적용하였음

22) 단,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음

23)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

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²⁴⁾는 규정²⁵⁾이 있으나 기업 승계 주식의 증여시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²⁶⁾ 및 연부연납²⁷⁾의 적용을 배제함
 - 신고세액공제란 법정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연부연납이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의해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것임

나) 증여 후 상속세 과세특례(증여 후 상속)

-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기업상속 관련 규정을 적용함²⁸⁾
- 증여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기업승계 주식 등은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증여세액 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하되 공제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24)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다) 증여 후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²⁹⁾
 - 증여이익이란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의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타 이익의 증여를 말함³⁰⁾

3) 사후관리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에 ①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해당 기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함³¹⁾
 -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 해당 기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란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30) ①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상장으로 인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함.
 ② 합병에 의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란,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하여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함.
 ③ 기타 이익의 증여라고 하는 것은 ㉠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 제외)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통상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 포함)·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의미함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 제5항 및 제6항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말함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³²⁾
 -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³³⁾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 추징이 배제됨³⁴⁾

- 수증자가 사망하여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지자체에 증여하는 경우
-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가업의 승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³⁵⁾는 적용할 수 없음

32)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33)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수증인”으로 보며, 이하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34)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4

3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부모의 사망시에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것임

다. 연부연납제도³⁶⁾

-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연부연납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 상속재산보다 납부기한을 더 연장해서 적용하고 있음
 -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②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③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연부연납기간은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이고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후 3년부터 12년임
 - 2004.1.1.~2007.12.31. 기간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부터 15년임

3.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정연혁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저율과세 그리고 연부연납시 연장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다음에서는 이 중 핵심이 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도입부터 최근의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을 살펴봄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1987년 도입되었음
 - 1996년까지는 상속세법상 상속 공제시 기초공제 1억원에 추가로 물적공제로서 1억 원을 허용하는 수준이었음
 - 당시 물적공제의 대상은 주택,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장이었으며, 영농상속인 경우에 1억원의 추가공제가 허용되었음
 -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되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의 사업용자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기초공제액 2억원에 추가하여 1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이었음

- 2008.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됨
 - 중소기업의 유지 및 존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한 것임
 - 상속 전 사업영위기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됨

- 공제한도를 확대한 지 1년만인 2009.1.1. 이후부터 한도금액을 사업영위기간별로 차등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도금액도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상속 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기존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였음
 - 사업영위기간별로 공제한도를 차별화한 것은 장수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며, 중소기업 평균 사업영위기간이 11.4년임을 감안하여 이보다 짧은 10년으로 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음

〈표 II-7〉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개정연혁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공제금액	한도액
1997.1.1.~1998.12.31.	5년 이상	1억원	-
1999.1.1.~2007.12.31.	5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2008.1.1.~2008.12.31.	15년 이상	Max[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2억원]	한도 30억원
2009.1.1.~2011.12.31.	10년 이상 ~ 15년 미만	Max[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2억원]	60억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2012.1.1.~2013.12.31.	10년 이상 ~ 15년 미만	Max[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2억원]	100억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2014.1.1. 이후	10년 이상 ~ 15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200억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차원에서 2012.1.1. 이후 공제한도 금액을 300억원 까지 상향조정함
 - 한도금액의 확대와 더불어 공제율도 기존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에서 70%로 확대하여 실제로 공제가능한 금액을 크게 확대하였음
- 2014.1.1. 이후 상속분부터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로 공제율을 확대하고 한도금액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였음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가업상속공제 통계자료는 2008년 이후부터 제공되고 있음
 - 공제한도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9년이지만 실제 공제금액은 2010년에 들어서야 360억원으로 전년도 83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에도 역시 공제한도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실제 공제금액은 큰 증가를 보이지 않음

〈표 II-8〉 기업상속 공제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과세		과세미달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2008년	41	3,217	10	831
2009년	37	8,356	6	1,439
2010년	46	36,487	8	2,131
2011년	35	30,091	11	2,417
2012년	46	30,707	12	3,638

자료: 국세청, 온라인 국세통계자료 〈표 6-2-7〉

- 기업상속공제제도가 도입된 당시에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1.1.1. 이후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음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출액 규모가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2014년에는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중견법인까지 적용됨
 -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전체 중견기업 중 매출액 3천억원 이하에 속하는 기업의 수는 대략 전체의 79%를 차지함

〈표 II-9〉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의 개정연혁

적용시기	매출액
1997.1.1. ~ 2010.12.31.	중소기업
2011.1.1. ~ 2012.12.31.	중소기업 매출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2013.1.1. ~ 2013.12.31.	중소기업 매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
2014.1.1. 이후	중소기업 매출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

-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기업상속공제율과 공제한도 금액을 꾸준히 확대하였고 대상이 되는 법인의 규모도 점차 확대하였으나

한편으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강화하는 면이 있었음

- 지원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피상속인의 요건으로서 계속사업 경영기간과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완화하는 추세로 개정되었음

- 계속사업 경영기간이 2008년 당시에는 15년이었으나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2009년 이후 10년으로 완화함
- 대표이사 재직요건도 2008년 당시에는 가업 영위기간의 80%라는 일률적인 요건을 적용하였으나 제도의 적용이 더 용이하도록 재직기간도 줄이고 현실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음

〈표 II -10〉 피상속인의 요건 개정연혁

적용기간	피상속인의 계속사업 경영기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2008.1.1.~2008.12.31.	15년 이상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중 80% 이상 재직
2009.1.1.~2010.2.17.	10년 이상	
2010.2.18.~2014.2.20.	10년 이상	① 또는 ② ①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60% 이상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 재직
2014.2.21. 이후	10년 이상	① 또는 ② 또는 ③ ①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③ 10년 이상의 기간 ¹⁾

주: 1)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대표이사를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사전승계의 경우)

□ 피상속인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은 2010.12.31. 이전의 경우 상장법인은 40%이었으나 2011.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30%로 개정됨

- 상장법인 외의 법인인 경우는 50%로 동일함

〈표 II-11〉 주식보유비율 요건 개정연혁

구분	2010.12.31. 이전	2011.1.1. 이후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40%	30%
상장 외 법인	50%	50%

- 상속인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2014년 개정에서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배우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에 상속인의 병역의무, 질병요양, 학업 등을 추가하였음
 - 현실적으로 가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임

- 사후관리 요건과 관련하여서도 2014.1.1 이후 상속분부터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요건을 완화한 부분이 있음
 -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의 유지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기업공개 등 지분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예외 사유를 추가하였음
 - 업종 유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에 산업분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세분류를 적용함으로써 업종 유지가 용이해짐

- 중소기업 고용유지 요건을 10년간 평균 1.0배 유지조건에 각 사업연도 말에 기준연도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되면서 부담이 증가됨

〈표 II-12〉 고용유지 요건 개정연혁

적용연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2011	없음	10년간 평균 1.2배 이상
2012~2013	10년간 평균 1.0배 이상	
2014.1.1 이후	10년간 평균 1.0배 이상(10년 후 판단) +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기준연도 ¹⁾ 의 80% 이상	

주: 1) 2011~2013년 기간에는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말에 기준연도로 하였으나 2014.1.1. 이후부터는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을 기준연도로 함

Ⅲ. 주요국의 기업상속 과세특례 현황

1. 일본

가. 기업상속 과세특례³⁷⁾

- 일본은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두고 있음
 - 상속세 납세유예란 경영자의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그 친족인 후계자가 취득한 자사주식의 80%에 해당하는 부분의 상속세 납세를 유예하는 것임
 - 증여세의 납세유예란 현 경영자로부터의 증여에 의해 그 친족인 후계자가 취득한 자사주식에 대응하는 증여세 100% 상당액의 납세를 유예하는 것임
 - 친족이란 ① 6촌 이내의 혈족(조카 등), ② 배우자, ③ 3촌 이내의 친족(사위 등)임
 - 납세유예 대상이 되는 주식은 후계자가 상속·증여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포함해 발행의결권주식 총수의 3분의 2까지임

- 신고기한 후 5년간 요건을 만족하면 상속세 납세유예가 지속되고 5년 경과 후 납부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다만 5년 이내의 기간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유예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

37) 日本 中小企業庁(2014)

1) 적용 요건과 대상 자산

- 납세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요건, 선대 경영자의 요건, 후계자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회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일 것
 - 중소기업자는 업종별 자본금 요건 또는 종업원 수 요건에 따라 판단함
 - 상장회사 및 풍속영업회사가 아닐 것
 - 종업원이 1인 이상일 것
 -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자산관리회사는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사업용 자산 비중이 70% 이상의 회사(자산보유형 회사) 및 총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사업용 자산 운영 수입의 비중이 75% 이상인 회사(자산운용형 회사)를 의미함
 - 다만, 상시종업원이 5명을 초과하고 상시종업원이 근무하는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소유 및 임대하고 있으며 3년 이상 계속해서 상품판매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표 Ⅲ-1〉 중소기업자의 범위

주요 사업	자본금	종업원 수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3억엔 이하	300인 이하
제조업 중 고무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공업용벨트제조업 제외)	3억엔 이하	900인 이하
도매업	1억엔 이하	100인 이하
소매업	5천만엔 이하	50인 이하
서비스업	5천만엔 이하	100인 이하
서비스업 중 소프트웨어 및 정보처리서비스업	3억엔 이하	300인 이하
서비스업 중 여관업	5천만엔 이하	200인 이하

자료: 日本 中小企業庁(2014), p. 2

- 선대 경영자인 피상속인(또는 증여자)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승계하는 회사의 대표자이어야 함
 - 상속개시 직전에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친족 등으로 총의결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후계자를 제외한 자 중 최대 주주임
 - 증여의 경우, 선대 경영자인 증여자는 증여 시점까지 회사의 임원을 퇴임하여야 함

- 상속인(또는 수증자)인 후계자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선대 경영자의 친족이어야 함
 - 상속 개시 직전에 임원이어야 하고 상속 개시부터 5개월 후에 대표자이어야 함
 - 증여세 납세유예의 경우에는 증여일에 20세 이상으로, 증여 직전 3년 이상 임원이어야 함
 - 상속 개시 시점에 있어 후계자와 후계자의 친족 등으로 총의결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여야 하고 이들 중에서 최대 주주이어야 함

- 대상이 되는 자산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 개시 시점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를 한도로 함
 - 증여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2) 납세유예 절차

-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산업대신의 인정, 세무서에 납세신고의 절차가 필요함
 - 상속 개시 후 8개월 이내에 경제산업성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 후 인정서가 교부됨
 -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가 있는 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신청함
 - 인정서 사본과 함께 상속세신고서(증여세신고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함
 - 납세유예세액 및 이자 금액에 맞는 담보를 제공함
 - 특례를 받은 비상장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면 납세유예세액 및 이자의 금액에 맞는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됨

- 납세유예 개시 후 5년간 경제산업성 및 세무서에 납세유예를 지속하기 위한 신고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인정시점의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하기 위하여 경제산업성 경제산업국에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를 연 1회 제출하여야 함
 - 계속 납세유예 특례를 받고자 하는 것을 신고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계속신고서(継続届出書)를 연 1회 제출함
-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세무서에 3년에 1회 계속신고서를 제출함

3) 사후관리³⁸⁾

- 신고기한 후 5년간 요건을 만족하면 납세유예가 지속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유예액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여 함
 - 각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함

가) 납세유예의 지속

- 신고기한 후 5년간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면 납세유예가 지속됨
 - 후계자가 회사의 대표자일 것
 - 고용의 80% 이상을 유지할 것
 - 후계자가 최대주주일 것
 - 상장회사, 풍속영업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유예대상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을 것
 -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유예세액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된 상속세의 납부가 면제됨

38) 일본 국세청, “No.4148 非上場株式等についての相続税の納税猶予”
(<https://www.nta.go.jp/taxanswer/sozoku/4148.htm>)

- 경영승계상속인(후계자)이 사망한 경우
- 경영승계기간 경과 후에 특례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을 후계자에게 증여하고 그 후계자가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및 면제 특례의 적용을 받은 경우
- 경영승계기간 경과 후에 특례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된 회사에 대해 파산절차개시결정 및 특별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된 증여세의 납부가 면제됨

- 선대 경영자(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 후계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경영승계기간 경과 후에 특례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된 회사에 대해 파산절차개시결정 및 특별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

다) 유예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유예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

-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영승계 상속인 등이 대표권을 갖지 않게 된 경우
-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의 일정한 기준일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상속 개시 시수의 80%를 밑돌았을 경우
-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영승계 상속인 및 경영승계 상속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경영승계 상속인 등의 친족 등 일정한 사람)가 보유하는 의결권 수의 합계가 총의결권 수의 50% 이하로 된 경우
-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영승계 상속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경영승계 상속인 등을 넘어서 의결권 수를 가지게 된 경우
- 경영승계 상속인 등이 특례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 특례 대상 회사가 해산을 한 경우 또는 해산을 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 특례 대상 회사가 자산보유형 회사 또는 자산운용형 회사에서 일정한 것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특례대상 회사의 사업 연도의 총수입액이 0이 된 경우

- 유예세액의 납부사유에 의하여 납부하는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유예 기한까지의 일수에 3.6%의 이자율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나. 기업상속 과세특례 관련 개정 및 논의

1) 2013년의 주요 개정내용

- 일본은 2009년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유예제도가 도입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적용되어 왔으나 2013년 세법개정에서 전반적인 개정안이 제시됨
- 2013년 세법개정에서는 ‘상속세의 기초공제 축소’ 및 ‘소규모택지 등의 특례 재검토’ 등과 함께 ‘사업승계세제의 재검토’를 실시하였음³⁹⁾
 - 이는 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와 사업활동의 지속을 목적으로 세제 및 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 왔으나 적용요건의 엄격함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저조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2013년 세법개정시 조세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유예 및 면세특례(이하 ‘사업승계세제’라 함)의 적용요건 완화 및 수속의 간소화가 이루어졌음
 -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이나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에 적용함
 - 다음에서는 사업승계세제의 세부적인 개정 내용을 소개함
-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유예제도에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39) 福田和仁(2014)

- 증여세 납세유예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승계 계획에 대해 증여가 행해지기 전에 경제산업대신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함
 - 당해 증여일이 속하는 해의 익년 1월 15일까지 경제산업대신에게 소정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인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 상속세 납세유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발생일의 익일부터 8개월 이내에 (인정신청 기한) 경제산업대신에게 소정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인정신청을 하여야 함
 - 이번 개정으로 사전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제도의 적용이 가능해졌음
- 친족 외 승계도 증여세 유예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함
- 납세유예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경영을 승계하는 후계자는 선대 경영자의 친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사업승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친족 내 승계의 비율이 60% 정도까지 감소하였고 후계자를 친족 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친족 내에 후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원이나 종업원 등의 책임자로 경영을 위임하는 ‘친족 외 승계’를 모색하게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주식취득을 위한 주가 산정이나 자금 준비, 증여세 납세 등이 부담되어 임원이나 종업원이 사업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음
 - 이번 개정으로 ‘회사의 존속’과 ‘고용의 보존’의 관점에서 친족 외 승계도 증여세의 납세유예의 대상에 포함하였음
- 고용유지 요건을 5년간 매년 80% 유지에서 5년 평균 80% 유지로 완화하였음
- 현재는 납세유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 적용 후 5년간 매년 고용의 80% 이상을 유지하는데, 중소기업 종업원의 고용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기 쉽고 경영환경에 따라서는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곤란해질 수 있음
 -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납세유예가 취소되면 그때까지 유예되었던 증여세액을 전액 일괄납부해야 하므로 세부담에 의해 경영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

-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개의 사업연도가 아닌 경영승계기간의 5년 평균 80%를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 납세유예가 취소되는 경우에 유예세액과 함께 이자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2015년 1월 1일 이후의 납세유예 기간 중에는 이자세율을 연 0.9%로 인하하고 납세유예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영승계기간인 5년간의 이자세가 면제되도록 하였음
- 상속세의 유예세액 산정에 있어, 선대 경영자의 개인채무, 장례비용을 주식 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음
- 선대 경영자의 임원퇴임 요건을 완화하였음
 - 현재는 증여세 납세유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선대 경영자는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시점에 임원을 퇴임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에 있어서 선대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신용도나 노하우를 활용하거나 인수하는 것은 경영의 승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임
 - 따라서 세법개정에서 '증여시에 회사의 대표권을 갖지 않을 것(대표자 퇴임 요건)'이라는 요건을 완화하여 임원을 퇴임하지 않더라도 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수를 받는 유급임원으로 남아 있는 것도 가능함
- 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납세유예가 취소되어 유예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납(延納) 또는 물납(物納)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부터 적용함
-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주식 발행을 하지 않았어도 납세유예제도의 적용이 인정됨
-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재검토하여 적용요건을 강화함
 -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특정 자산보유회사와 자산운용회사에 대해 상시종업원에서 경영승계 상속인 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하도록 하였음

2) 사업승계 세제에 관한 논의⁴⁰⁾

- 일본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후계자의 사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를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러한 감면정책은 고도 경제 성장기에 대량으로 창업한 경영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것이 폐업에 이르는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어 지역경제의 활력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귀중한 기술력과 노하우도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음

- 2009년 세제개정에서 도입된 비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의 도입 당시 사업승계세제에 대한 평가는 이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음
 - 중소기업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20%, “제도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음

- 2013년도 세제개정에서는 제도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음
 - 제도의 적용에 앞서 경제산업대신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요건을 폐지하였고 친족 외 승계도 대상으로 함
 - 한편, 고용의 80% 이상을 5년간 매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5년간 평균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현 경영자의 증여 시 임원 퇴임요건은 대표자 퇴임으로 변경되는 등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음
 - 이러한 개정은 중소기업이 기술·노하우를 차세대에 계승하여 지역의 고용을 확보하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제도의 재평가 및 개선이 이루어진 것임

- 개정 내용에 대한 평가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적용하기 편리한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의견임
 - 그러나 사외의결권주 등의 3분의 2 상한을 100%로, 상속세의 유예 비율을 80%에서

40) 加藤 浩(2013), pp. 48~50

100%로 하는, 보다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음

- 정부의 입장은 차세대로의 원활한 사업승계가 사업자의 경영 의욕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연결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사업승계에 대한 배려가 부모의 재산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창업하는 자와 사업을 승계하는 자 간의 기회의 균등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음
 - 즉, 차세대의 경영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산의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의견임

- 또한 사업승계 지원세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여 신규 사업의 개시와 용지 매각 및 사업전환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업승계 지원세제가 토지 이용 전환을 억제한다는 견해도 있음
 - 또한 경쟁력 없는 기업을 연명시키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

- 고용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사업승계를 요구하는 사회적·경제적 요청과 과세 형평성을 잃지 않으려는 상속세의 기본 방침 간에 충돌이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사업승계에 관한 세제는 정책적인 특례조치이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 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로서 해당 제도의 이용이 편리성 확대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의 성장 전략으로 결정된 ‘日本再興戰略’에서는, 경영자의 고령화·후계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자의 세대교체, 친족 외의 사업승계 등에 의한 유용한 경영자원의 이전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독일

가. 기업상속 과세특례

1) 적용 요건

- 상속과 증여를 원인으로 독일, EU에 소재하는 사업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제도(기업상속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전체 상속대상 사업자산에서 임대자산, 투자자산 등의 수동자산(passive assets)이 차지하는 비율이 50%(85% 기업상속공제) 또는 10%(100% 기업상속공제)를 초과하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대상자산 및 공제금액

-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독일, EU에 소재하는 사업자산 (business property)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자산은 농림업 자산, 사업 자산, 법인 지분, 파트너십의 지분이 해당됨⁴¹⁾
 - 법인 지분은 독일, EU 내에 본점이 소재한 자회사의 지분을 의미함
 - 피상속인 또는 피상속인과 기타 조합원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합산하여 25% 이상을 직접 소유한 경우에 한함
 - 지분을 계산시 기타 조합원과 기업을 분산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합산하여 25%의 비율을 적용하되,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기타 조합원이 상호 동의하여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한 의무가 있는 주주에게만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있음

41) ErbStG §13b(1)

- 이 규정은 자산이전 시점의 피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임

- 관리자산(administrative assets) 또는 수동자산(passive assets)이 사업자산의 일정비율(50% 또는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⁴²⁾
 - 관리자산 또는 수동자산이란 위험부담 없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임대 자산(제3자에게 임대한 토지, 임차권이 있는 권리 및 건물 등), 법인 소액주식(25% 미만), 투자자산, 예술품, 골동품, 도서, 수집품, 귀금속, 보석류 등을 의미함

가) 85% 공제

-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상속 및 증여로 독일에 소재하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산의 85%를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
 - (기업의 유지 요건) : 상속인은 승계받은 기업을 기업승계 후 5년 동안 그 자산과 함께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고용의 유지 요건) : 상속인은 기업승계 후 5년 동안 고용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고용 유지 요건은 사업승계 후 기업에서 5년간 지급된 급여의 합계액이 기업승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400% 이상이어야 함
 - 기업승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급여총액은 상속개시 전에 종료된 최근 5개 연도의 평균 급여지급액⁴³⁾
 - 상근직이 아닌 시간제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급여는 급여 합계액에서 제외함⁴⁴⁾
 - (사업자산 비율 요건) : 임대자산, 투자자산 등 수동자산(passive assets)은 전체 상속대상 사업자산의 50% 미만이어야 함

42) ErbStG §13b(2)

43) ErbStG §13a(1)

44) ErbStG §13a(4)

나) 100% 공제

- 상속인은 85% 공제 요건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산을 전액 과세 면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⁴⁵⁾
 - (기업의 유지 요건) : 상속인은 승계받은 기업을 기업승계 후 7년 동안 그 자산과 함께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고용의 유지 요건) : 상속인은 기업승계 후 7년 동안 고용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기업승계 후 7년간 급여총액은 기업승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700%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자산 비율요건) : 임대자산, 투자자산 등 수동자산(passive assets)은 전체 상속대상 사업자산의 10% 미만이어야 함

3) 사후관리

- 다음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과세면제 혜택이 경감됨
 - 기업승계 후 5년(또는 7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승계받은 기업자산을 청산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업 유지기간 동안 기업자산의 일부만 유지한 경우에도 과세혜택을 안분하여 사후 추정함⁴⁶⁾
 - 단, 기업자산을 5년(7년) 이상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상속증여세법 제13b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승계 대상 자산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⁴⁷⁾
 - 기업승계 후 5년(또는 7년)간 급여총액이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기업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증여세의 사후 추징이 발생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이 사실

45) ErbStG §13a(8)

46) ErbStG §13a(5)

47) ErbStG §13a(5), IBFD(<http://www.ibfd.org/?bookmarkablePage=home>) 독일제도

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신고하여야 함⁴⁸⁾

- 임금지급액 요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기간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이며, 사업자산 유지 요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기간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임

나. 기업상속 과세특례 관련 개정 및 논의

1) 도입시점

- 독일은 상속기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상속기업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논의가 2002년 바이에른 주에서 있었음⁴⁹⁾
- 2006년 중소기업 육성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승계 조세감면법안’을 연방 각의에서 의결하였고,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06년 11월 7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상속증여세법상 과세대상 자산별로 평가 차이 때문에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연방헌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조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함⁵⁰⁾
 - 독일 입법 기관은 2008년까지 헌법에 적합한 평가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속증여세법이 자동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음
 - 독일 정부는 2007년 11월 21일 상속·증여세법과 평가법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였고, 같은 해 12월 11일 각료회의를 통과하고, 2008년 11월에 하원을 통과하게 됨
 - 2008년 12월 5일에 상속세개혁법(Erbchaftsteuerreformgesetz, ErbStRG)이 상원을 통과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사망 또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 평가의 개정과, 사후관리 요건 등이 적용됨

48) ErbStG §13a(6)

49) 조봉현(2013), p. 11

50) 사업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농림업 자산과 부동산은 평가방식과 특별공제로 인해 현금 및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과세소득으로 계산되어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음(김진·송은주·정희선(2010), pp. 62~63)

〈표 Ⅲ-2〉 독일의 가업상속공제(사업자산공제) 연혁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2002년	바이에른 주에서 상속기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상속기업 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 논의
상속세개혁법 이전 (~2009년 1월 1일)	· 225,000유로 이하의 사업자산: 100% 공제 · 225,000유로 초과하는 사업자산 : 35% 공제
상속세개혁법 (2009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	① 85% 공제 · 가업의 계속성: 7년 · 고용의 계속성: 7년간 급여총액이 가업승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650% 이상 · 사업자산 비율: 수동자산 50% 이하 ② 100% 공제 · 가업의 계속성: 10년 · 고용의 계속성: 10년간 급여총액이 가업승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1,000% 이상 · 사업자산 비율: 수동자산 10% 이하
경제성장촉진법 (2010년 1월 1일~)	① 85% 공제 · 가업의 계속성: 5년 · 고용의 계속성: 5년간 급여총액이 가업승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400% 이상 · 사업자산 비율: 수동자산 50% 이하 ② 100% 공제 · 가업의 계속성: 7년 · 고용의 계속성: 7년간 급여총액이 가업승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700% 이상 · 사업자산 비율: 수동자산 10% 이하
재정법원 위헌법률심사제청 (2012년 9월 27일)	재정법원은 독일의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제청을 하였고, 위헌결정이 진행중에 있음

자료: 김진·송은주·정희선(2010), p. 61 참조 및 수정

- 2009년 11월 9일 경제성장촉진법안(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이 승인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2008년에 개정된 상속증여세의 혜택이 더욱 강화됨
- 경제성장촉진법안은 독일의 경기부양책으로써, 2009년 9월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 연정이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였음

2) 재정법원의 기업상속공제의 위헌법률심사제청 주요 내용

- 2012년 9월 27일 독일의 재정법원(Federal Court of Finance)이 연방헌법재판소(Federal Constitutional Court)에 기업상속공제(2009년 1월 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제청을 하였음⁵¹⁾
 - 상속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이 동법 제13a조, 제13b조와 결합 시 평등권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임
 - 상속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상속자의 분류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상속증여세법 제13a조, 제13b조는 기업상속공제와 관련된 조항임

- 재정법원은 독일의 현재 기업상속공제 규정이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견해이며, 이는 다음의 이유에 따른 것임
 - 현행 기업상속공제는 기업 자산, 농업 또는 산림업 자산, 공동출자 기업의 지분의 취득에 대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상속증여세 감면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 일반적인 상속과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 사업용 자산을 규정하는 권리를 남용하여 개인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포함시켜서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위험성이 있음
 - 피상속인 등은 임의로 그의 사적인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하여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적인 자산도 상속증여세를 감면받게 됨
 - 수동적 자산(passive asset)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만 되면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이용하여 수동적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증여세를 감면 받음
 - 독일은 상속증여세법 제13a조와 제13b조의 기업상속공제라는 조세혜택 외에도 동법 제16조에서 일반적인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규정하여 상속세가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함
 - 재무법원은 독일에서 상속세가 법규정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과세가 거의 이루

51) http://www.meritas.org/emea_tax/march-2013-germany.htm

어지지 않게 되는 상속세법 사문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함

3. 영국

가. 기업상속 과세특례⁵²⁾

- 영국은 기업상속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로써 사업자산공제(Business Property Relief)제도를 두고 있음
- 사업자산공제란 요건을 만족하는 중요 사업자산(relevant business property)의 이전에 대해 일정률을 반영하여 공제함으로써 상속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임
 - 상속세법(Inheritance Tax Act 1984)의 §103~§113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공제율은 자산 유형별로 50% 또는 100%가 적용됨
 - 사망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뿐만 아니라 생전 이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함
- 동일 자산에 대하여 사업자산공제와 농업자산공제(Agricultural Property Relief)⁵³⁾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음

1) 적용요건

- 사업자산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 자산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격요건을 갖춘 자산의 이전이어야 함⁵⁴⁾

52) 기업상속 세제지원 내용은 영국 국세청(HMRC)의 “SVM111000-IHT Business Property Relief”와 “HMRC Inheritance Tax: Customer Guide”를 참고하여 정리함

53) 농업자산공제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영국에 소재하는 농업용 자산의 이전에 대신 상속세 부과 시 해당 자산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며, 본 보고서는 사업자산공제만 대상으로 함

54) HMRC, “IHT Business Property Relief: Business relief practice notes”
(<http://www.hmrc.gov.uk/manuals/svmanualnew/SVM111020.htm>)

- 적절한 자산이란 ① 중요사업자산(relevant business property)의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② 양도자(transferor)의 소유권 유지기간 요건(minimum period ownership)을 만족하고 ③ 판매계약에 귀속되지 않은 자산이어야 함
- 주식인 경우 추가적인 요건으로 ① 해당 회사가 청산 중에 있지 않아야 하고, ②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③ 적절한 사업(qualifying business)을 운영하여야 함

□ 사업자산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음⁵⁵⁾

- 자산을 이전하기 직전 2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자산이 전체적으로 또는 주로 (wholly or mainly)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자산의 이전 시점에 보아도 미래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요구되지 않는 자산

가) 중요 사업자산

□ 공제대상이 되는 중요 사업자산(relevant business property)은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⁵⁶⁾

- 사업 또는 사업에 대한 지분을 구성하는 자산
 - 사업(business)에 대한 정의는 상속세법(IHT)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판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상거래(trade)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사업이란 이익(gain)을 위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함
 - 사업이 유가증권(stocks, shares, securities), 토지의 거래 및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라면 사업자산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주식 이전으로 회사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비상장회사의 유가증권(securities)
 - 장외주식시장(USM: Unlisted Securities Market) 또는 대체투자시장(AIM: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포함됨
 - 통제권(control)은 의결권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의미함

55) HMRC, <http://www.hmrc.gov.uk/manuals/svmanualnew/SVM111210.htm>

56) Toby Harris, *Business and Agricultural Property Relief*, 2011, p.105

- 모든 비상장 주식(unquoted shares)
- 주식 이전으로 회사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상장회사의 주식
- 토지, 건물, 기계, 설비(plant)로서 이전 직전에 양도자가 통제하는 회사 또는 양도자가 파트너로 있는 파트너십이 수행하는 사업에 전체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었던 것
- 토지, 건물, 기계, 설비로서 이전 직전에 양도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전체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었고 양도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

나) 소유기간

- 일반원칙에 의하면 자산의 이전 직전 2년 동안 양도자가 보유한 자산에 한해 사업관련 자산으로 봄⁵⁷⁾
 - 즉, 자산의 이전 직전 2년 동안 양도자가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산공제에 적격하지 않음
- 자산의 대체(replacement), 조직재편(reorganization), 연속이전(successive transfer)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2년의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사업자산공제의 적용이 가능함⁵⁸⁾
 - 주식이나 유가증권(shares or securities)이 대체되는 경우, 이전하기 직전 5년 중 2년 동안 양도자가 소유한 자산이고 대체된 자산과 대체 이전의 자산이 모두 사업자산공제에 적격한 자산이면 감면 대상에 포함됨
 - 조직재편(capital re-organization), 주식전환(conversion of securities), 기업회생(company reconstruction), 합병(amalgamation) 등을 통해 다른 주식과 교환하여 주식을 수취한 경우 교환 전 주식과 교환으로 수취한 주식의 보유기간을 합한 기간이 보유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함
 - 사업자산공제를 적용하여 이전받은 후 2년간 보유하고 주식을 다시 이전하는 경우

57) HMRC, "IHT Business Property Relief: Minimum period of ownership- general rule"
(<http://www.hmrc.gov.uk/manuals/svmanualnew/SVM111060.htm>)

58) HMRC, "IHT Business Property Relief: Other circumstances where basic rule relaxed"
(<http://www.hmrc.gov.uk/manuals/svmanualnew/SVM111080.htm>)

에도 사업자산공제의 적용이 가능함

2) 대상자산 및 공제율

-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이라면 해당 자산별 감면율에 따라 상속세 감면이 이루어짐
 - 모든 비상장회사의 주식(unquoted shares): 100%
 - 비상장이고 이전 직전에 양도자가 통제권을 가진 회사의 유가증권(securities): 100%
 - 유가증권은 채무증권(debentures, loan notes 등)도 포함
 - 이전 직전에 양도자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상장회사 주식: 50%
 - 전체적으로 또는 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던 모든 토지, 건물, 기계, 설비: 50%

〈표 Ⅲ-3〉 자산 유형별 공제율

(단위: %)

대상 자산	공제율
사업 또는 사업에 대한 지분	100
양도자가 통제권이 있던 비상장 회사의 유가증권 ¹⁾	100
비상장 주식	100
양도자가 통제권이 있던 상장회사 주식	50
이전 직전에 전체적으로 또는 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던 토지, 건물, 기계, 설비	50

주: 1) 유가증권(securities)은 부채성 증권(debentures, loan notes)도 포함

자료: HMRC, "SVM111040-IHT Business Property Relief: Categories of business property and rates of relief"(http://www.hmrc.gov.uk/manuals/svmanualnew/SVM111040.htm)

3) 사후관리

- 사후관리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나. 기업상속 세제지원 관련 개정 및 논의

- 사업자산공제(BPR)는 FA 1976을 통해 도입되었고⁵⁹⁾ 이후 공제 규모의 확대와 제도의 단순화 측면에서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음⁶⁰⁾
- 1976년 4월 6일 이후의 자산 이전에 대해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도입 당시 공제율은 30%이었음
 - 1977년 10월 27일부터는 복수의 공제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음
 - 1992년 3월 10일부터는 공제율이 기존의 50% 공제율은 100%로, 30%의 공제율은 50%로 증가하였음
- FA 1996에 의해 모든 비상장주식의 이전에 대해 100%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제도가 단순화됨
 - 개정된 규정은 1996년 4월 6일 이후 발생하는 자산의 이전에 대해 적용함
 - 시행일 이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세 대상과 생전의 자산이전 합계액 모두에 적용됨

59) 농업자산공제(APR)는 사업자산공제보다 앞선 FA1975에 도입되었음

60) FA 1975에서는 사업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이자 없이 분할납부(installment)를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표 Ⅲ-4〉 주식 유형별 공제율 개정연혁

(단위: %)

대상자산	적용기간	공제율
지배주식(control holdings)	1976.4.7 ~ 1977.10.26	30
	1977.10.27 ~ 1992.3.9	50
	1992.3.10 이후	100
의결권 주식의 25% 초과 지분	1977.10.27 ~ 1983.3.14	20
	1983.3.15 ~ 1987.3.16	30
	1987.3.17 ~ 1992.3.9	50
	1992.3.10 이후	100
의결권 주식의 25% 미만 지분	1977.10.27 ~ 1983.3.14	20
	1983.3.15 ~ 1992.3.9	30
	1992.3.10 ~ 1996.4.5	50
	1996.4.6 이후	100

자료: HMRC, "SVM111290-IHT Business Property Relief: Appendix 1- Business Relief rates"

4. 미국⁶¹⁾

가. 기업상속 과세특례

- 2013년 1월 「납세자의 세금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이 통과되어 기업상속공제(estate tax deduction for qualified family owned business interests; QFOBI deduction)는 영구히 폐지되었으나, 폐지 이전의 기업상속 과세특례에 대해 아래에서 간략히 살펴봄

1) 적용 요건⁶²⁾

- 가족소유 사업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상

61) 미국 국세청, *Survivors, Executors, and Administrators*, 2014. 1.

62) IRC §2057

속재산, 상속인과 관련하여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함

가)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8년의 기간 중 적어도 5년 동안 해당 사업지분을 소유하고 사업활동에 중대하게 참여(material participation)하며, 사망 당시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지분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사업지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 상속대상 사업이 여러 가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지분율은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있음
 - 두 가족 사업의 경우 두 가족 구성원의 지분율은 70% 이상이고 피상속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 세 가족 사업의 경우 세 가족 구성원의 지분율은 90% 이상이고 피상속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 가족(member of family)이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의붓자식, 손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비속, 부모의 직계비속 등을 말함⁶³⁾
 - 사망당시 피상속인은 미국의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거주자여야 함

나) 상속재산 요건

- 조정 총유산가액(adjusted gross estate) 중 가족사업지분은 50%를 초과해야 하며, 주된 사업 장소는 미국에 소재해야 함

63) IRC §2032A(e)(2)

※ 50% 초과 심사(50% liquidity test)

$$\frac{(1) \text{ 피상속인의 사망시 이전한 기업사업지분} + \text{생전에 증여한 기업사업지분} - \text{상속채무}}{(2) \text{ 피상속인의 총유산액} - \text{상속채무} + \text{생전 증여재산가액}} > 50\%$$

: (1)의 계산방법

첫째, 유산세 과세목적상 적용 가능한 할증(premiums)과 할인(discounts)을 고려하여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 가액을 평가함

둘째,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 가액에서 관련 채무를 차감함

- 관련 채무는 아래 (a)와 (b)의 합계액에서 (c), (d), (e)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a) 유산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 (b) 미지급 대출금 또는 총유산과 관련 있으나 그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기타 채무
- (c) 개인 거주주택 부채
- (d) 교육비 및 의료비 지급에 사용된 부채
- (e) 1만달러를 한도로 (c) 및 (d)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금액

셋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을 그 가족구성원에게 이전하였고(lifetime gifts), 그 가족구성원이 이를 증여일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증여가액을 가산함

- 생전에 증여한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 가액은 증여일자에 평가한 금액을 이용함

: (2)의 계산방법

첫째, 유산세 과세 목적상 피상속인의 총유산가액을 평가함

둘째, 피상속인의 총유산가액에서 해당 유산과 관련된 부채 및 청구액을 차감함

셋째, 생전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함

- 피상속인이 생전에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을 그 가족구성원에게 증여하였고 그 가족 구성원이 이를 증여일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증여 가액을 가산함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내에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함
- 피상속인이 사망 전 3년 내에 증여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함

자료: 김진·송은주·정희선(2010), p.44 및 수정

다) 상속인 요건

□ 가족사업지분의 상속 요건을 갖춘 상속인(qualified heir) 전원은 사후관리와 관련된 환수계약(recapture agreement)에 서명해야 함

○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을 상속받은 자를 의미함

-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을 그 가족에게 처분한 경우 해

당 가족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으로 간주함

- 가업상속공제 목적상 해당 기업의 현 근로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역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으로 보고 있음

2) 대상자산

-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요건을 갖춘 가족소유 사업지분(Qualified Family-Owned Business Interests)’에서 사업지분이라 함은 개인기업, 법인, 유한책임회사(LLC) 및 파트너십의 지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 가족사업이 법인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분인 주식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3년 내에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함
 - 한편, 개인지주회사(personal holding company) 지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가족사업에 수동자산(passive assets)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이때 수동자산이라 함은 해당 사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함
 - 운전자본(working capital)으로서 매일의 합리적인 필요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유가증권
 - 자본취득을 위한 적립금(accumulation for capital acquisitions)
 - 배당, 임대료, 로열티, 이자, 연금 및 개인지주회사의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
 - 신탁 및 파트너십 지분
 -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

3) 가업상속공제액

- 가족사업 지분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 지분가액(qualified family-owned business interests)과 67만 5천달러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유산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⁶⁴⁾

- 기업상속공제 금액 = Min[요건을 갖춘 가족사업 지분가액 67만 5천달러
- 기업상속공제 금액은 유산세 기본공제 금액과 합하여 130만달러(부부합산신고의 경우 260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4) 사후관리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동안 특정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세제혜택은 환수되며, 상속인은 추가 유산세(additional estate tax)를 납부해야 함

가) 요건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내에 상속받은 가족사업지분을 처분해서는 안됨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사업활동에 중대한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상속인 또는 그 가족구성원이 8년의 기간 중 최소 5년 동안 사업활동에 중대하게 참여하지 않은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동안 미국의 시민권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사업장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를 미국으로 해야 함

나) 추가 유산세액의 계산

-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게 되는 추가 유산세는 (1) 요건을 갖춘 사업지분이 총유산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을 경우 추가로 납부했어야 할 유산세에 (2)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산함
 - (1)의 추가로 납부했어야 할 유산세액은 기업상속공제(QFOBI deduction)로 인해 줄어든 유산세에 적용비율(applicable percentage)을 곱하여 계산함

64) IRC §2057(a)

- 적용비율은 상속인 및 그 가족구성원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해당 사업에 중대하게 참여한 연도(number of years)에 기초하여 계산함
 - 피상속인 사망 후 중대하게 사업에 참여한 연도가 6년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은 100%이며, 7년은 80%, 8년은 60%, 9년은 40%로 계산하여, 기업상속공제로 적용받은 세제혜택을 환수하게 됨
- (2)의 이자상당액(interest)은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에 대한 유산세 납부기한을 시작으로 추가 유산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부율(underpayment rate)을 적용하여 계산함

나. 기업상속 과세특례 관련 개정 및 논의

1) 도입시점

〈표 Ⅲ-5〉 미국의 유산증여세 연혁

연도	법률	주요 내용
1916	The Revenue Act of 1916	- 연방유산세(Federal estate tax) 도입
1918		- 자선 기부에 대한 공제(Charitable deduction)가 추가됨
1924		- 2년간 증여세(gift tax)의 한시적 도입
1932		- 증여세의 완전한 도입, 증여에 대한 면세 한도(5만달러) 신설
1935		- 유산의 가치평가 방법으로 대체평가방식(Alternate Valuation) 도입
1948		-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 허용
1976	The Tax Reform Act of 1976	- 유산세와 증여세의 통합 - 세율 및 면세범위를 동일하게 적용 - 세대생략이전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시행
1981	The 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	- 배우자 공제의 한도 폐지(Unlimited Marital deduction) - 통합공제(Unified credit)를 6년간 점진적으로 확대(62,800달러→192,800달러) - 최고세율을 3년간 점진적으로 500만달러 70%에서 300만달러 50%로 인하
1984		- 최고세율을 55%로 인상

〈표 Ⅲ-5〉의 계속

연도	법률	주요 내용
1997	The Taxpayer Relief Act of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공제(Unified credit, 혹은 applicable exclusion amount라고도 함)를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92,800달러에서 555,800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 - 물가연동(indexing)을 적용 - 기업상속공제 신설
2001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까지 유산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단계적 인하 - 2010년에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폐지(repeal)를 규정 - 2010년 증여세율은 소득세율 최고수준으로 인하
2010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2010년에 잠정 폐지되었던 유산세가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부활 - 유산세의 최고세율은 2010년부터 35%로 하며, 면세점은 500만달러 - 세대생략이전세는 2011년부터 다시 시행되며 적용세율은 35%이며, 면세점은 유산세와 동일함 - 증여세는 2011년 이후에 유산세와 동일한 세율구조, 면세점, 통합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
2013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세율은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만달러 초과 구간에 대해 40%의 최고세율 신설(유산증여세 강화) - 기업상속공제 폐지

자료: 미국 국세청(<http://www.irs.gov/>); 미국 의회(<https://beta.congress.gov/>)

- 미국은 「1998년 국세청 구조조정 및 개혁법(Internal Revenue Service Restructuring and Reform Act of 1998)」을 통해 유산세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상속공제제도 (estate tax deduction for qualified family owned business interests; QFOBI deduction)를 도입하였음(공제한도는 67만 5천달러)

- 도입 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상속공제제도가 적용되었으며, 2001년 「경제성장과 세금감면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상속공제의 적용이 중지되었고, 2013년 1월부터 영구 폐지됨

2) 주요 개정논의

- 2013년 「미국납세자의 세금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이 통과되어 유산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 면세점 적용 등의 일부가 개정되고, 기업상속공제는 영구히 폐지되었음
 - 폐지 배경은 유산증여세의 면세점 상향(534만달러)에 따라 기업상속공제가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인식과 상속인에게 가족상속공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오랜 인식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⁶⁵⁾

- 2014년 3월 오바마 정부는 2017년부터 유산증여세의 부담수준을 2009년 당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조치 등의 버핏룰(Buffett Rule) 및 항목별 공제 등의 조세지출(과세소득의 28% 이하)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15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⁶⁶⁾
 - 2014년 유산증여세의 최고세율은 40%이지만, 2017년에는 유산세(estate tax), 세대생략이전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증여세(gift tax) 모두 2009년 당시의 45% 수준으로 최고세율이 인상됨⁶⁷⁾
 - 면세점(applicable Exclusion amount)도 2009년 당시의 수준, 즉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경우 350만달러, 증여세의 경우 100만달러로 인하함
 - 면세점에 대해서는 물가연동(indexing for inflation)에 의한 인상도 없음

65) CCH(2013), p.25

66) 미국 재무부(<http://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j11887.aspx>)

67) 2013년 유산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결정된 이유는 2009년 유산세 최고세율 45%와 2012년 유산세 최고세율 35%의 중간값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임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가업상속 과세특례 적용 요건

- 가업상속 과세특례 적용 요건은 크게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다음에서는 ‘가업상속 과세특례 적용 요건’, ‘가업상속 재산의 범위 및 공제금액’, ‘사후 관리 요건’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영국의 가업상속 과세특례 제도를 비교 검토함
 - 미국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미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국제비교에서 제외함
-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규모 및 업종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은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함
 - 일본은 규모 면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풍속영업회사, 자산관리회사는 적용을 배제함
 - 독일은 기업의 규모제한이 없음
 - 영국의 경우도 규모와 업종에 제한이 없고 단지 이익을 위한 영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피상속인 요건의 경우 독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국에서 모두 요건을 두고 있으며, 이는 소유 요건과 사업 참여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피상속인의 사업참여 요건에서 영국은 2년의 기간 요건을 두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이 회사의 대표로서 최대주주 요건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경영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최대주주여야 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표 IV-1〉 가업상속 과세특례 적용 요건

구분		우리나라	독일	영국	일본
가업 의 요건	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비상장 중소기업
	업종	제한 없음 ¹⁾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적용 제외: ① 풍속영업회사 ② 자산관리회사 (비사업용 자산 비중이 70% 이상, 비사업용 자산 운영수입이 75% 이상)
	기타	없음	-	없음	종업원 1인 이상
피상속인 요건		① 거주자 ② 10년 이상 경영 ③ 대표이사 재직 ④ 최대주주 1인	-	① 소유요건 기간: 상속 직전에 피상속인이 2년간 소유	① 회사의 대표자 ② 지분을 과반수 보유하고 (후계자 제외) 최대주주
상속인 요건		① 18세 이상 ② 상속 직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③ 상속신고기한 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④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 상속	-	-	① 피상속인의 친족 ② 상속 직전에 임원이고 상속개시 5개월 이내에 대표자 ③ 상속개시 시점에 의결권 과반수 보유

주: 1) 과세유형장소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이 있었으나 2014.2.21 개정으로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음.
조특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업종 제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 상속인 요건은 독일과 영국은 없으며, 우리나라는 상속 직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이어야 하며, 상속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음
 - 주요국 중 상속인 요건이 있는 일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친족이어야 하며, 상속 직전에 임원이며, 상속개시 시점에 의결권을 과반수 이상 보유하고 상속개시 5개월 이내에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상속인 요건을 운영함

- 피상속인의 요건을 보면 10년 이상 경영에 참여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며 최대 주주이어야 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업력을 고려 할 때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업체 수가 많지 않음
 - 2009년 통계청 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5년 미만이 41.1%, 5~10년 미만 28.3%로 전체적으로 10년 미만이 차지하는 사업체의 수는 69.4%에 이룸
 - 우리나라에서 2011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36.6%가 가업상속의 사전요건 중 가장 완화해야 할 부분으로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사업 영위'를 들었음

- 다른 국가들은 피상속인의 계속사업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음
 - 영국의 경우에 2년간 지분 보유요건이 있고, 독일과 일본 등은 사전적인 경영 참여 요건이 없음

- 최근 일본의 개정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적용하기 편리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된 내용을 보면, 증여세 유예제도의 경우 적용에 앞서 경제산업대신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요건을 폐지하였고 친족 외 승계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고용의 80% 이상을 5년간 매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5년간 평균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현 경영자의 증여 시 임원 퇴임요건은 대표자 퇴임으로 변경하였음
 - 의결권주 등의 3분의 2를 100%로 하고 상속세의 유예 비율을 80%에서 100%로 하

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개정은 실현되지 않았음

2. 가업상속 재산의 범위 및 공제금액

- 우리나라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각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
 -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함
 - 법인기업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사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한 지분을 공제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산출함

- 일본은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의결권 주식의 3분의 2를 한도로 취득한 주식의 상속세액의 80% 상당액까지 납세유예함

- 독일은 수동자산이 전체 상속대상 사업자산의 50%(85% 면제) 또는 10%(100% 면제) 이하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상속재산은 사업자산, 농림업자산, 법인 주식, 파트너십의 지분이 해당되며, 법인 주식의 경우 4분의 1 이상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됨
 - 수동자산이란 위험부담 없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비사업용 부동산(제3자에게 임대한 토지, 임차권이 있는 권리 및 건물 등), 법인의 소액주식(25% 이하), 투자자산, 예술품, 귀금속 등을 의미함

- 영국은 기업지분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100%, 상장주식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IV-2〉 가업상속 재산의 범위 및 공제금액

구분	우리나라	독일	영국	일본
재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 개인기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산, 농림업 자산, 법인 주식, 파트너십의 지분 (1/4 이상 직접 소유) - 상속대상 사업자산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동자산이 전체 상속사업자산의 50% 이하(85% 공제) ② 수동자산이 전체 상속사업자산의 10% 이하 (100%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지분,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 	비상장주식
공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 한도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5년 미만 계속 경영: 200억 ② 15년 이상 계속 경영: 300억 ③ 20년 이상 계속 경영: 5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속대상 자산의 85%공제 ② 상속대상 자산의 100% 공제 - 한도금액: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지분, 비상장주식: 100% ② 상장주식, 토지·건물·기계·설비 등: 50% - 한도금액: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유예금액: 취득한 자사주식의 80%에 상당하는 세액 - 한도금액: 의결권 주식 총수의 2/3

□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의 개정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음

-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공제율 및 한도금액의 확대와 적용대상의 확대라 할 수 있음
 - 1997년도에는 공제금액이 1억원이었으나 이후 2008년 30억원의 한도 내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최고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공제가 가능함
 - 도입 초기에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1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

견기업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2013년에는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그리고 2014년에는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포함되어 적용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커졌음

- 이와 같이 적용대상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한도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현재도 추가적인 한도 확대에 대한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의 경우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폐지되었으나 제도가 시행되었을 당시 한도금액이 67만달러에 불과하였고 일본도 제도의 도입시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를 한도로 납세유예가 적용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은 2013년 가업상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편이 있었으나 공제율의 확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중 불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음

- 독일과 영국은 대상 기업의 규모와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업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 영국의 경우 가업(business)에 대해 상속세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아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판례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상속증여세 감면특권은 평등권 위반과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회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 공제율을 보면, 영국은 비상장주식은 100%, 상장주식은 50%만 공제가 허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100% 공제가 가능함

□ 이상 조사대상 국가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과 공제율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과 증여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함

- 가업상속에 대한 조세지원은 상속의 경우에는 가업상속자산의 100% 공제를 적용하고 있고 사전 증여에 대해서는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10%의

저울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저울과세 이후 상속시 다시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거나 다시 기업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기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저울과세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인 30억원의 한도를 유지하고 있음
 - 2008년은 기업상속공제제도의 한도금액이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가한 시기인 것으로 보아 2008년 증여세 저울과세 도입 시 상속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한도금액을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후 기업의 사전 증여에 대한 제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속세 과세체계와 기업상속 지원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상속에 의한 기업상속과 증여에 의한 자산이전에 대해 동등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노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망 이전에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기업에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증여에 대해서도 상속과 동일한 조세지원을 적용하는 것임

3. 사후관리 요건

-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의 사후관리 기간은 각각 10년, 7년, 5년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길다고 할 수 있음
 - 영국은 사후관리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시기에 전액 추징하였으나 2014년 이후 귀속분부터는 요건이 위배된 기간에 비례하여 추징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 독일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경감하고 있음

- 가업승계 후 5년(또는 7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승계받은 가업자산을 청산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와 급여총액이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안분하여 추징함

○ 일본의 경우에도 위반사항 발생시 유예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표 IV-3〉 가업상속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우리나라	독일	일본
가업자산 유지	상속 후 10년간 가업용 자산 80%(5년 이내는 90%) 이상 보유	① 85% 공제: 승계받은 사업을 사업승계 후 5년 동안 계속유지 ② 100% 공제: 7년 동안 계속 유지	5년간 사업 유지
가업 종사	상속 후 10년간 가업에 종사	-	상속 후 5년간 상속인이 회사의 대표자
지분 유지	상속 후 10년간 상속 지분 유지: 상장 30% 이상, 비상장 50% 이상	상속 후 5년(7년)간 사업승계받은 법인 주식 유지	상속 후 5년간 ① 납세유예대상주식 계속 보유 ② 최대주주
고용 유지	상속 후 10년간 고용유지: ① 각 사업연도 정규직 고용평균이 기준인원의 80% 이상 ② 10년 고용평균이 기준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 기준인원: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	① 85% 공제: 사업승계 후 5년간 급여총액은 승계 사업연도 급여총액의 400% 이상 ② 100% 공제: 7년간 급여총액이 700% 이상	상속 후 5년간 고용의 80% 유지

□ 우리나라는 원활한 가업상속승계를 위해 2013년에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후 10년간 가업을 영위하고,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요건과 고용유지 요건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독일도 사업승계 후 5년간 급여총액이 사업연도 급여총액의 400% 이상(연평균 80%), 7년간 급여총액이 700% 이상(연평균 100%)의 고용 유지 요건을 두고 있으며, 일본도 상속 후 5년간 고용의 80% 유지, 대표직 유지,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참고문헌

- 국세청, 『2014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2014.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2.
- 김진·송은주·정희선, 『주요국의 가업상속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 세법연구 10-3, 한국조세연구원, 2010.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원종학·이형민·홍성열,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세법연구 12-08,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이광재, 『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4.
- 조봉현, 「독일의 가업 상속세 감면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 중소기업학회, 2013. 6.
- 福田和仁, 「改正された事業継承税制」, みずほ総合研究所, 2014. 1.
- 加藤 浩, 「資産課税改革の動向と展望—相続税・贈与税に係る論点をめぐって—」, レファレンス 2013. 10.
- 日本 中小企業庁, 「事業継承の際の相続税・贈与税の納税猶予制度」, 2014.
- CCH, *estate, Gift, and Generation-Skipping Provisions Explained*, 2013.
- CCH, *U.S. Master Tax Guide*, 2014.
- Toby Harris, *Business and Agricultural Property Relief*, Bloomburly Professional Ltd., 2011.
- 독일 법률정보(<http://www.gesetze-im-internet.de/aktuell.html>)

미국 국세청(www.irs.gov/)

미국 의회(<https://beta.congress.gov/>)

영국 국세청(HMRC), <http://www.hmrc.gov.uk/>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부록 1〉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체계

1. 일본

- 일본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음
 - 상속세는 상속, 유증,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취득시점의 시가로 과세함
 - 증여세는 유증 및 사인증여를 제외한 개인 간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 과세함
 - 증여세는 상속과세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생전증여에 의한 상속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일본의 상속세제는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취득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과세방식도 병행하고 있음
 - 즉, 상속세 총액은 유산분할에 관계없이 산출한 후 상속세 비율에 따라 산출세액을 안분한 금액에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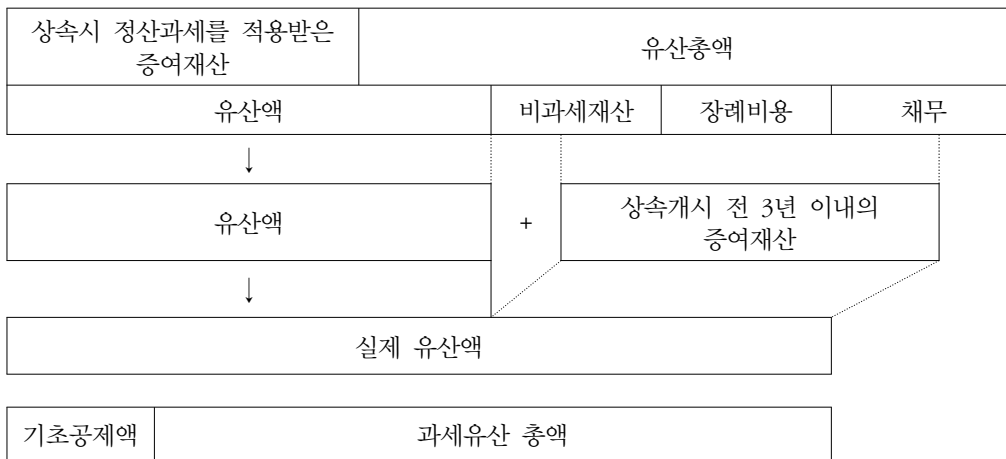
가. 상속세

- 상속세는 상속이나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재산과 상속시정산과세의 적용을 받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 가액의 합계액인 과세유산 총액이 기초 공제액을 넘는 경우에 그 넘는 부분(과세유산총액)에 대해 과세되는 것임
 - 과세유산 총액은 유산총액에서 채무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

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임

- 이 경우 상속세의 신고 및 납세가 필요하며 그 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한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10개월 이내임

[부도 1] 상속세 과세체계



자료: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answer/sozoku/4102.htm>

- 상속세의 과세표준인 과세유산총액은 과세가격 합계액에서 유산에 관한 기초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 과세유산총액이 기초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음

- 과세가격은 사망한 자의 재산을 상속이나 유증(사인 증여 포함)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지만 다음의 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함
 - 상속이나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재산
 - 이에 해당하는 것은 사망보험금,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권리, 사망퇴직금, 신탁재산, 유언에 의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재산 등이 있음
 -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 전 3년 이내에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
 -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그 재산을 증여받은 때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함

-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을 받은 증여재산
 -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상속시 정산 과세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증여시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함

-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평가는 상속세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 시기의 시가로 하고 있음

- 과세가격 합계액에서 차감되는 비과세 재산은 다음과 같음
 - 묘지와 묘석, 신을 모시는 도구 등 일상 예배를 드리는 것
 -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확실한 것
 -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신과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이 취득하는 보조금의 수급권
 - 상속에 의해 취득했다고 간주된 생명보험금 중 500만엔에 법정 상속인의 수를 곱한 금액까지의 부분
 - 상속이나 유증에 의해 지급된 퇴직보험금 중 500만엔에 법정 상속인의 수를 곱한 금액까지 부분
 - 개인으로 운영하는 유치원 사업에 사용된 재산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
 - 상속인 중 1인이 계속 그 유치원을 경영하는 조건이 있음
 - 상속이나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상속세의 신고 기한까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특정 법인에 기부하거나 특정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출한 것

〈부표 1〉 상속세 납부세액의 산출방법

<p>〈과세가격 합계액의 계산〉</p> <p>상속, 유증, 간주상속에 의해 취득한 유산총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재산 -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용 +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적용 선택한 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3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p>과세가격 합계액</p>
<p>〈상속세 총액의 계산〉</p> <p>과세가격의 합계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액(5천만엔 + 1천만엔×법정상속인의 수) <p>과세유산총액</p> <p>과세유산총액을 각 법정상속인이 각각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가정한 상속인 별 취득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누진세율(10~50%) <p>상속세 총액 (개인별 세액의 합계)</p>
<p>〈상속인별 세액의 계산〉</p> <p>상속세 총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속인별로 취득한 과세가격 / 과세가격의 합계액) <p>상속인별 세액</p>
<p>〈상속인별 납부세액의 계산〉</p> <p>상속인별 세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세액공제, 미성년자세액공제, 장애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기납부 증여세액 세액공제 <p>상속인별 납부세액</p>

자료: 일본 국세청, “상속세의 계산”(http://www.nta.go.jp/taxanswer/sozoku/4152.htm)

-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존재했던 채무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는 유산 총액에서 차감됨
-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 등이 납부 또는 징수하게 된 소득세 등의 세금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도 채무로서 유산 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장례비용은 채무는 아니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유산 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사망 직전 3년 내에 이루어진 생전 증여재산⁶⁸⁾ 및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적용대상 자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함
 - 상속일 3년 내의 생전 증여재산 및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기 때문에 증여일 이후 발생한 가치 상승분은 과세되지 않음⁶⁹⁾

-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란 재산의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시 증여세를 일단 납부하고 그 후의 상속시에 그 증여 재산과 상속 재산을 종합하여 계산한 상속세에서 이미 지불한 증여세를 공제하는 제도임
 - 수증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증여 재산의 종류, 금액, 증여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 65세 이상의 증여자로부터 20세 이상의 자녀(추정 상속인)가 수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함
 - 2015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60세 이상, 수증자가 20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로 범위가 확대됨
 - 이 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증여재산의 합계에서 다년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2,500만엔(비과세)을 공제한 금액에 일률적으로 20%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함
 - 이 제도를 선택한 경우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상속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됨

- 상속세 면세점이 되는 기초공제액은 5천만엔(정액공제)에 법정상속인 1인당 1천만엔(비례공제)이 가산된 금액이며, 2014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정액공제액은 3천만엔, 법정상속인별 공제액은 600만엔으로 인하됨
 - 기초공제액은 1985년 큰 폭으로 인상된 바 있고 현재의 공제액은 1994년부터 유지

68) 그 증여재산 가운데 증여세 계산에 있어 배우자공제를 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차감한 잔여가액이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가산됨

69) 원종학·이형민·홍성열(2012), p. 57

된 것임⁷⁰⁾

- 1975년 이후 개인재산의 증가 및 지가의 상승, 일반적인 물가수준의 상승을 고려하여 정액 공제액을 2천만엔에서 4천만엔으로 인상하였고 법정상속인 비례공제액도 400만엔에서 800만엔으로 인상하였음
- 그 후 1992년부터 실시된 토지에 대한 상속세 평가의 적정화에 따라 정액공제가 4,800만엔으로 법정상속인 비례공제액은 950만엔으로 인상되었음
- 1994년 세제개정으로 세제의 간소화 측면에서 정액공제가 5천만엔으로 법정상속인 비례공제가 1천만엔으로 각각 인상되었음

〈부표 2〉 일본의 상속세 기초공제액 개정내역

적용연도	상속세	증여세
1975년	2,000만엔 + (400만엔 × 법정상속인 수)	60만엔
1985년	4,000만엔 + (800만엔 × 법정상속인 수)	
1992년	4,800만엔 + (950만엔 × 법정상속인 수)	
1994년	5,000만엔 + (1,000만엔 × 법정상속인 수)	
2001년		110만엔
2015년	3,000만엔 + (600만엔 × 법정상속인 수)	110만엔

- 상속세율은 현재 10%에서 50%까지 6단계 누진세율구조이나 2015년부터 10%에서 55%까지 8단계 누진세율구조로 과세될 예정임

70) 김진 · 송은주 · 정희선(2010), p. 84

〈부표 3〉 일본의 상속세 세율구조

(단위: 만엔, %)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구간	한계세율	과세구간	한계세율
0 ~ 1,000	10	0 ~ 1,000	10
1,000 ~ 3,000	15	1,000 ~ 3,000	15
3,000 ~ 5,000	20	3,000 ~ 5,000	20
5,000 ~ 10,000	30	5,000 ~ 10,000	30
10,000 ~ 30,000	40	10,000 ~ 20,000	40
30,000 초과	50	20,000 ~ 30,000	45
		30,000 ~ 60,000	50
		60,000 초과	55

- 각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세액은 각자의 산출세액에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임
- 상속인별 세액공제로 배우자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음
 - 그 외에도 잇단 상속공제⁷¹⁾, 국외재산 상속분에 대한 공제가 있음
 -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납부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재산(피상속인의 사망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포함) 및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을 받은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합계액이 유산에 관한 기초 공제액을 넘는 경우에 필요함
- 과세유산액이 기초공제액의 범위 내에 있으면 신고가 필요없음
 - 상속세 납부는 연납과 물납에 의한 납부가 가능함

71) 잇단(相次) 상속공제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상속이 있고 전후의 상속 모두에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후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액으로부터 전의 상속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조정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임

- 분할납부를 하려면 상속세가 10만엔을 초과하고 현금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연납기간은 최장 5년임

나. 증여세

- 증여세 과세는 ‘역년과세’ 또는 ‘상속시 정산과세’의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짐
 - 역년과세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받은 재산의 합계액에서 기초공제액의 110만엔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임
 - 상속시 정산과세란 증여자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에서 2,500만엔의 특별 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20%의 단일세율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임

-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 사이에서 거주용 부동산 또는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금전이 증여된 경우, 기초공제 110만엔 외에 최고 2천만엔까지 배우자공제가 가능함⁷²⁾
 - 배우자 공제는 동일 배우자 사이에서는 일생에 한번만 적용할 수 있음

- 증여세 과세표준은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증한 증여재산의 가격의 합계로부터 비과세대상·납세유예대상 재산가액을 차감하고 배우자공제 및 기초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증여세의 세율은 10~50%의 6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상속세보다 과세구간 적용금액이 낮은 편이므로 같은 재산이 동일인에게 이전된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 부담보다 높은 편임
 - 다만, 일본에서의 증여세 산출구조는 누적과세 방식이 아닌 역년과세 방식이므로 기간별 분산 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음

72) 相続税法 21の6

〈부표 4〉 일본의 증여세 세율구조

(단위: 만엔, %)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증여		2015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			
과세구간	세율	20세 이상인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그 외의 경우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0~200	10	0~200	10
0 ~ 200	10	200~400	15	200~300	15
200 ~ 300	15	400~600	20	300~400	20
300 ~ 400	20	600~1,000	30	400~600	30
400 ~ 600	30	1,000~1,500	40	600~1,000	40
600 ~ 1,000	40	1,500~3,000	45	1,000~1,500	45
1,000 초과	50	3,000~4,500	50	1,500~3,000	50
		4,500 초과	55	3,000 초과	55

- 증여세의 경우 인적공제 성격의 세액공제 및 기 납부 세액공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만이 적용 가능함
 - 외국에 있는 재산의 증여를 받고 일본의 증여세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외국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증여를 받은 해의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함
 - 증여세 신고의무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발생함

2. 영국

- 영국의 상속세는(inheritance tax: IHT)는 한 개인의 생애 동안의 증여와 그가 사망한 시점에서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이전세(capital transfer tax)라는 명칭에서 1986년에 상속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⁷³⁾

73)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 2009, p. 199

-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영국은 상속세만 존재하고 증여세는 없음
 - 증여에 대해서는 자본이득 차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산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음

- 상속세(inheritance tax)는 일반적으로 사망시점에 유산(estate)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지만 사망 이전의 증여(gift)나 신탁(trust)에 대해서도 부과됨⁷⁴⁾
 - 상속세는 총유산에서 부채 및 장례비용 등과 각종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대상 유산금액이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사망 7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을 합산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하고 있음
 - 과세대상 금액에 상속세 기본공제(면세점)를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에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함

〈부표 5〉 영국의 상속세액 산출과정

총유산(gross total of the estate in UK)
<u>- 부채, 장례비용, 유산관리비용 등</u>
조정된 총유산(total estate in UK)
<u>- 배우자 공제, 기부금 공제 등</u>
공제 후 순유산(total net estate in UK)
<u>+ 국외재산, 신탁 등 추가 재산(Total other assets taken into account to calculate the tax)</u>
총과세대상 유산(total chargeable estate)
<u>+ 사망 7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u>
총과세대상 자산액(tentative estate tax)
<u>- 상속세 기본공제(Inheritance Tax nil rate band at the date of death)</u>
과세표준(Value chargeable to tax)
<u>× 세율(40%)</u>
산출세액(Inheritance Tax)

자료: 원종학 · 이형민 · 홍성열(2012), p. 69에서 수정

74) 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http://www.hmrc.gov.uk/inheritancetax/intro/basics.htm>

- 총유산액에서 특정 배우자 또는 자선단체 등에 이전한 자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다양한 감면제도(exemption and relief)를 두고 있음
 - 배우자 공제(spouse or civil partner exemption):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유산이나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이 상속세 과세가 면제됨
 - 자선단체 면제(charity exemption): 영국에 등록된 자선단체에 생전 또는 유언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 면제됨
 - 잠재적 면제 이전(potential exempt transfers): 증여가 있는 후 7년 동안 생존해 있는 경우 그 증여에 대해서는 금액에 제한 없이 상속세가 면제됨
 - 연간 면제(annual exemption): 매년 3천파운드까지의 증여(gift)에 대해 과세 면제함
 - 소액 기부 과세면제(small gift exemption): 250파운드 미만의 소액 기부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 결혼할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과세 면제됨
 - 사망한 자가 소유하였던 기업(회사), 농장, 삼림지대 또는 문화유산(National Heritage) 자산 등의 상속에 대해 적용하는 다양한 공제제도(relief)가 있음

- 면세점에 해당하는 32만 5천파운드(2014-15 과세연도)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고 면세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단일세율로 과세함
 - 면세점 기준 금액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2015년까지 동결하였음

- 2007년 10월부터 부부(married couple)와 등록된 파트너(registered civil partner)의 배우자 중 나중에 사망하는 자의 사망 시점에 과세면제되는 금액은 65만파운드(2014-15 과세연도)로 증가함
 - 이는 부부 중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면세점(threshold)을 나중에 사망하는 배우자의 사망 시점으로 이전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표 6〉 영국의 상속세 면세점 금액

(단위: 파운드)

적용기간	면세점 금액
2005.4.6. ~ 2006.4.5.	275,000
2006.4.6. ~ 2007.4.5.	285,000
2007.4.6. ~ 2008.4.5.	300,000
2008.4.6. ~ 2009.4.5.	312,000
2009.4.6. ~ 2015.4.5.	325,000

자료: 영국 국세청(HMRC), <http://www.hmrc.gov.uk/rates/ihl-thresholds.htm>

-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사망 전 7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던 세금의 세액공제가 가능함
- 상속세의 납부에 있어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 분납이 가능한 자산은 토지와 건물, 특정 유가증권, 기업의 순자산, 농업용 토지 및 자산임
 -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즉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함
 - 분납기간은 최대 10년임

3. 미국

- 미국은 개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과 생존시 무상으로 이전할 때 연방정부에서 유산세(Estate tax), 증여세(Gift Tax), 세대생략이전세(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가 부과됨⁷⁵⁾
 - 유산세는 연방정부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특권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임⁷⁶⁾

75) 연방정부의 유산증여세와는 별도로 주정부도 유산세(estate tax)와 상속세(inheritance tax) 모두를 부과하거나 유산세 또는 상속세 중 하나를 부과함(메릴랜드 주는 유산세 16%, 상속세 10%를 부과하고 있음)

76) 유산세는 유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세가 계산되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유산 전체에 세

- 증여세는 개인이 유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생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 과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증여세는 개인이 생전에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무상(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거래 포함)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임
- 세대생략이전세는 생전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산이전에 대해 최고세율로 과세되는 것임⁷⁷⁾

가. 유산세⁷⁸⁾

- 유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망시점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이며,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유산세를 신고·납부함⁷⁹⁾
 - 개인용품, 주식, 가구, 보석, 은행예금과 조합의 출자지분 등 모든 재산은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에 포함됨⁸⁰⁾
 - 법원이나 유언에 의해 지명된 유산재산관리인은 유언 또는 주법(state law)에 따라 재산을 배분함
- 미국의 유산세 과세체계는 <부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유산재산에서 비과세 및 공제항목을 차감하고 1976년 이후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를 가산하여 유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함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통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유산세 납부세액을 산출함

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를 계산함

77) IRC §2601-§2664

78) IRC §2001-§2210

79) IRC §2001(a)

80) 미국 국세청(<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state-and-Gift-Taxes>)

〈부표 7〉 유산세 과세체계

총유산재산(gross estate)
- 비과세 및 과세가액공제(부채, 장례비용, 의료비, 유산관리비용, 재해손실, 공익성 유증, 주정 부상속세 공제, 배우자 공제 등) ¹⁾
= 과세대상 유산(taxable estate)
+ Post-76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1976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²⁾
= 유산세 과세표준(estate tax base)
× 세율(18~40%)
= 잠정 유산세액(tentative estate tax)
- 1976 이후의 증여세 납부액
-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 통합세액공제(unified transfer tax credit)
- 외국납부 유산세 공제 등
= 유산세 납부세액

주: 1) 공익성 유증은 사망한 자의 처분의사에 따라 적격단체에 이전한 재산가액을 말하며, 배우자공제는 유산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에서 배우자에게 이전된 자산가액을 말함

2) Post-76은 1976년 이후의 증여재산과세표준은 전체 과세표준 계산할 때 가산되지만, 1977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과세표준에 가산되지 않음

자료: 미국 국세청(<http://www.irs.gov/>); 원종학·이형민·홍성열(2013), p.37 참조 및 수정

- 총유산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권을 보유한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자산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생존 당시 소유권을 양도하였지만 양도한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수취할 권리가 계속 유지되거나 지배·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증여 자산도 총유산에 포함됨⁸¹⁾
 - 총유산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 연금(annuities), 일부 보험 수혜액 등도 포함됨⁸²⁾

- 총유산재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며, 유산재산관리인(executor)이 대체평가일(alternative valuation date)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① 유산재산 분배일, ② 대체평가일 중 빠른 날의 공정가치로 평가함⁸³⁾
 - 대체평가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81) IRC §2031

82) IRC §2039

83) IRC §2032

- 유산세의 과세표준은 총유산재산(gross estate)에서 유산 관련 경비와 손실, 고인의 부채, 배우자공제 등의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하고 1976년 이후 제공된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를 합한 금액이 됨
- 배우자공제(allowance of marital deduction)는 법정유산재산 내에서 생존 배우자에게 유산이 이전되면 해당 자산가액만큼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함⁸⁴⁾
 - 2014년 유산세의 면세점 통합한도는 534만달러이며, 생존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피상속인)의 미사용 면세 금액(unused exclusion amount of their deceased spouses)을 승계받을 수 있어서 생존 배우자의 유산시 및 증여시에 사용할 수 있음⁸⁵⁾
- 납세자가 평생 동안 유산이나 증여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2014년 기준 통합세액공제는 208만 1,800달러임⁸⁶⁾
- 생전에 증여세 계산시 통합세액공제를 적용한 납세자의 경우 추후 유산세 계산시 사용한 통합세액공제 금액을 차감조정하여야 함

〈부표 8〉 유산세 및 증여세와 세대생략세 면세점 및 통합세액공제

(단위: 달러)

과세연도	면세점(applicable Exclusion amount) ¹⁾	통합세액공제(applicable credit amount)
2010 ²⁾	5,000,000 ³⁾	1,730,800
2011	5,000,000	1,730,800
2012	5,120,000	1,772,800
2013	5,250,000	2,045,800
2014	5,340,000	2,081,800

주: 1) 면세점(기본공제금액)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됨

2) 2001년 세금감면법(EGTRRA)에 의하여 유산세와 세대생략세의 잠정적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 12월 17일 법 개정으로 유산세 및 세대생략세가 부활하였으며, 증여세의 면세점은 100만달러였음

3) 1달러=1,011원(2014년 6월 평균 매매기준율 환율)

자료: CCH, *U.S. Master Tax Guide*, 2014, p. 49; 미국 국세청(<http://www.irs.gov/>)

84) IRC §2056

85) IRC §2010

86) IRC §2010, §2505

- 유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12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며, 최저 18%에서 최고 40%의 세율이 적용됨
 - 유산세와 증여세는 아래의 세율체계가 동일하게 적용됨

〈부표 9〉 2014년 유산세 및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

(단위: 달러)

과세구간(초과)	과세구간(이하)	세율
0	10,000	18%
10,000	20,000	11,800+10,000 초과액의 20%
20,000	40,000	13,800+20,000 초과액의 22%
40,000	60,000	8,200+40,000 초과액의 24%
60,000	80,000	13,000+60,000 초과액의 26%
80,000	100,000	18,200+80,000 초과액의 28%
100,000	150,000	23,800+100,000 초과액의 30%
150,000	250,000	38,800+150,000 초과액의 32%
250,000	500,000	70,800+250,000 초과액의 34%
500,000	750,000	155,800+500,000 초과액의 37%
750,000	1,000,000	248,300+750,000 초과액의 39%
1,000,000	~	345,800+1,000,000 초과액의 40%

자료: 미국 국세청(<http://www.irs.gov/>)

- 유산재산관리인(executor) 등은 총 유산재산에서 생전의 증여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534만달러(2014년도 기준) 이상인 경우에 유산세 신고를 해야 함
 - 유산재산관리인은 유언에 따라 지명된 사람 혹은 은행 등이며, 유산을 평가하고 관리하며 유산세를 납부하고 자산을 분배할 책임이 있음⁸⁷⁾
 - 만일 유산재산관리인이 없으면 고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 의무를 짐

- 유산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최종연도 소득신고를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신고서 1040을 통해 하여야 하며, 유산세는 사망일로부터 9개월까지, 수탁소득 신고는 신고서 1041을 통해 4월 15일까지 상속재단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87) IRC §2002

- 유산신고 및 납부 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임⁸⁸⁾
- 소유집중사업(closely held business)은 분할납부 특례 조항이 있으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산세를 최대 10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지만, 이자가 가산됨⁸⁹⁾⁹⁰⁾
 - 총유산에 포함된 소유집중사업의 지분가치가 조정총유산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유산세 분할납부가 가능함
 - 소유집중사업의 지분(interest in a closely held business)은 소유권, 파트너십 지분, 법인의 주식 등을 의미함⁹¹⁾
 - 소유주(proprietorship)로서 운영하는 사업의 소유권
 - 피상속인이 사망시점에 운영 중이었던 파트너십의 파트너 지분
 - 피상속인이 사망시점에 운영 중이었던 법인의 주식
- 분할납부 대상 유산세는 총유산세 중 소유집중사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임
 - 분할납부 대상 유산세 = 총유산세 × $\frac{\text{소유집중사업 가치}}{\text{조정총유산}}$

나. 증여세⁹²⁾

- 과세대상 증여행위는 한 사람이 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신탁기금의 형식 등으로 물적, 인적 그리고 유·무형 재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발생함⁹³⁾
- 납세자는 매년 수증인 1인당 1만 4천달러 이하 금액을 제공하면, 이 금액은 과세대상

88) IRC §6075(a), 미국 국세청(<http://www.irs.gov/pub/irs-pdf/i706.pdf>)

89) IRC §6166

90) 일반적인 납부유예(§6161)는 6개월(유산세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91) CFR 20.6166A-2

92) IRC §2501-§2524

93) IRC Sec.2511(a)

에서 제외됨⁹⁴⁾

- 과세대상 증여가액은 1만 4천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부부는 같이 증여할 수 있어 매년 2만 8천달러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다수의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음

〈부표 10〉 연간 증여 공제(annual exclusion amount)

(단위: 달러)

과세연도	연간 증여 공제
2010	13,000
2011	13,000
2012	13,000
2013	14,000
2014	14,000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항목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됨
 - 제3자를 위하여 교육단체에 지불한 등록금
 -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단체에 지불한 의료경비
 - 정치단체에 대한 증여
 - 이혼으로 인한 서면합의에 따른 재산권의 배분, 이혼에 의한 미성년 자녀의 부양을 위한 자산 양도

- 미국의 증여세는 당해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이전 제공한 증여를 모두 합하여 현행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누적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액(현행 세율 기준)을 제외한 금액에 미사용 통합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금년도 과세대상 증여세를 산출함

94) IRC Sec.2053

〈부표 11〉 증여세 과세체계

-
- 현 시점의 과세대상 증여(1인당 연간 1만 4천달러 이하의 증여는 공제)
 - + 1932년 이후의 누적된 과세대상 증여
 - × 증여관련 면제·공제(학자금·의료비 면제, 기부금공제 등)
 - = 증여세 과세표준(gift tax base)
 - × 누진세율(18~40%)
 - = 잠정 증여세(tentative gift tax)
 -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 통합세액공제(unified transfer tax credit)
 - = **증여세 납부세액**
-

자료: 미국 국세청(<http://www.irs.gov/>); 원종학·이형민·홍성열(2013), p. 44 참조 및 수정

- 증여세는 유산세와 동일한 세율체계가 적용되므로 유산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잠정 증여세를 계산하고, 이 금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공제와 통합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을 산출함
- 증여세는 증여를 한 과세연도가 종료된 이후 다음해 4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⁹⁵⁾

4. 독일

- 독일은 상속증여세법(Erbchafts- und Schenkungssteuergesetz)에 따라 상속과 증여 원인으로 생긴 부의 증가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상속과 생전증여에 대한 세부담의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적용 세율과 누진구조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⁹⁶⁾

95) IRC §6075(b)

96) 김진(2008), p. 79

-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과 생존자 간의 증여, 조건부 증여 등으로 구분됨
-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으로서 상속인이며,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상속분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있음
 -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조건부 상속 및 증여의 경우에는 조건부 상속 및 증여 조건에 의하여 수혜를 받는 자(Beschwerte)임⁹⁷⁾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친인척도에 따라 3개의 과세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인적공제 금액 및 세율 등에 차등 적용하고 있음

가. 상속세⁹⁸⁾

-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을 상속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
 - 상속발생에 의한 재산의 취득
 - 유언에 의한 또는 상속에 대한 법적 청구권의 사용에 기초한 재산의 취득 등
- 독일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부표 12>와 같이 총상속재산에서 비과세항목과 공제가능한 채무 등을 차감하여 순상속대상 재산을 산출한 후,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 공제가능한 채무는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채이며, 상속재산 관리비용과 장례비용 등을 공제함
 - 상속재산 관리비용과 장례비용의 경우 관련 증빙이 없더라도 1만 300유로까지 공제 가능함

97) ErbStG §20①

98)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gesetz; ErbStG
(http://www.gesetze-im-internet.de/erbstg_1974/)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을 산출하며, 증여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음

〈부표 12〉 독일의 상속세 과세체계

총상속대상 재산가액
- 비과세상속재산가액, 공제 가능한 채무 등
= 상속세 과세가액
+ 과거 증여재산가액
-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
= 과세표준
× 세율(7~50%)
= 상속세 산출세액
- 기납부 증여세액 등
= 상속세 납부세액

자료: 원종학·이형민·홍성열(2013), p.83 참조 및 수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공제항목은 인적공제, 특별생계비공제, 물적공제가 있음
- 인적공제의 경우 1등급은 50만유로에서 10만유로까지 공제되며, 2등급과 3등급은 2만유로만 공제 가능함⁹⁹⁾
- 특별생계비공제는 배우자, 등록된 동성 파트너, 자녀, 사망자녀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항목의 공제로, 배우자는 25만 6천유로가 공제되며, 자녀 등은 연령별로 차등 공제함¹⁰⁰⁾

99) ErbStG §16

100) ErbStG §17

〈부표 13〉 독일의 인적공제 및 특별생계비공제

(단위: 유로)

상속인 구분		인적공제	특별생계비공제	
1그룹	배우자, 등록된 동성 파트너	500,000 ¹⁾	256,000	
	자녀, 사망자녀의 자녀	400,000	~5세	52,000
			6세~10세	41,000
			11세~15세	30,700
			16세~20세	20,500
			21세~27세	10,300
	손자손녀	200,000	-	
부모, 조부모(상속의 경우)	100,000	-		
2그룹	이혼한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증여의 경우), 형제자매, 조카, 의붓부모, 배우자의 부모	20,000	-	
3그룹	기타 상속인 및 수증인, 특별목적 기부	20,000	-	

주: 1) 1유로=1,383원(2014년 6월 평균 매매기준을 환율)

자료: 독일 상속증여세법(http://www.gesetze-im-internet.de/erbstg_1974/) 자료를 토대로 작성

- 물적공제는 ① 사업용 자산공제(가업상속공제) ② 주택공제 ③ 기타로 구분됨¹⁰¹⁾
- 생존 배우자가 거주하던 상속주택(family home)을 향후 10년간 거주주택으로 사용하면 상속세를 과세 면제하지만, 정당한 사유(치료목적의 이주 등) 없이 10년 내에 상속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하게 되면 상속세를 소급해서 과세함¹⁰²⁾
 - 자녀는 상속주택 면적이 200m² 이내인 경우에만 상속세를 과세 면제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함
 - 기타 물적공제로는 가사물품, 동산 등의 상속물품에 대해 1그룹은 각각 4만 1천유로, 1만 2천유로를 공제하며, 2그룹과 3그룹은 가사물품 등의 물품에 대해 각각 1만 2천유로를 공제함¹⁰³⁾

101) 사업용 자산공제(가업상속공제)는 '나. 가업상속 세제지원'에서 자세히 기술함

102) ErbStG §13(1)4b

103) ErbStG §13(1)1

〈부표 14〉 독일의 물적공제

구분		내 용
사업용자산공제(가업상속공제)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85% 또는 100% 공제
동거주택 공제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성 파트너	상속 이후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00% 공제
	자녀, 손자(사망자녀의 자녀)	200m ² 이하 부동산 100% 공제
기타 공제	1그룹	가사물품 등은 41,000유로, 동산 등은 12,000유로 공제 ¹⁾
	2그룹, 3그룹	가사물품, 동산 등은 각각 12,000유로 공제

주: 1) 가사물품은 의류, 가사도구 등을 의미하며, 현금, 주식, 부동산, 진주보석 등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IBFD(<http://www.ibfd.org>); 독일 상속증여세법(http://www.gesetze-im-internet.de/erbstg_1974/)
 자료를 토대로 작성

- 독일의 상속·증여세율은 7개의 과세표준 구간으로 나누어 최저 7%에서 최고 50%로
 부과하고 있으며, 친인척도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세율을 차등하게 적용하고 있음¹⁰⁴⁾
 ○ 1그룹은 7~30%이며, 2그룹은 15~43%, 3그룹은 30~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부표 15〉 2014년 독일의 상속·증여세율

(단위: 유로, %)

과세표준	세율		
	1 그룹	2 그룹	3 그룹
~ 75,000	7	15	30
75,000 ~ 300,000	11	20	30
300,000 ~ 600,000	15	25	30
600,000 ~ 6,000,000	19	30	30
6,000,000 ~ 13,000,000	23	35	50
13,000,000 ~ 26,000,000	27	40	50
26,000,000 ~	30	43	50

자료: 독일 상속증여세법 제19조

104) ErbStG §19

- 기납부증여세액 등은 기납부증여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음
 -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 발생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임
 -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또한 공제대상이 되지만(국외납부 후 5년이 지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 불가능) 외국납부세액이 독일내의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취득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 과세관청에 통보할 의무를 가짐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관계, 상속일, 상속자산의 종류와 가치, 사전증여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정보제공을 하며, 이후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및 납부 절차 여부를 결정 받음
 - 통보 후 신고 및 납부는 독일의 조세기본법의 절차를 따름

나. 증여세

- 생존자 간의 증여는 독일 상속증여세법 제7조 제1항(1-5호, 6호 폐지, 7-10호)에 열거되어 있음
 - 생존자 간의 무상출연을 통해 수익자가 출연자의 비용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 포괄적 구성요건으로 생존자 간의 증여를 정의하고 있음
 - 부담부 증여 및 조건부 증여: 부담의 이행 또는 조건의 성취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 국가의 허가를 요하는 증여: 허가를 받아 제3자로부터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 부부가 공동재산제를 약정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 상속 포기의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
 - 선순위 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이전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재단설립에 의한 재산양도
 - 재단·사단의 해산으로 인한 재산취득

- 정지조건, 시기의 제한이 있는 채권의 기한도래 이전에 보상금을 취득하는 경우

- 배우자 간에 거주하던 주택이나 거주공간을 증여하는 경우, 혹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와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 및 유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¹⁰⁵⁾

- 증여세 과세체계는 상속세와 동일하며,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세율 등도 상속세와 동일함

105) ErbStG §13(1)4a

〈부록 2〉 주요 자본이득세 운영국가의 과세 현황

- 상속세나 증여세를 폐지할 경우 피상속인이 유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치증가분은 과세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 있음
- 다음은 상속·증여세 폐지국가에서 규정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중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방법임

〈부표 16〉 상속세 폐지 국가의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구분	과세소득	과세시기
캐나다	피상속인의 자본이득	상속시점 ¹⁾
호주	취득가액 승계 ²⁾	상속인의 유산 처분 시

주: 1) 배우자 간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유산 처분 시점까지 과세이연 가능. 이때 과세소득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피상속인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과 상속인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의 합계임

2)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므로 과세소득은 피상속인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과 상속인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의 합계임. 한편,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1985년 9월 20일 이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취득원가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이때 과세소득은 상속인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임

〈부표 17〉 증여세 폐지 국가의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구분	과세소득	과세시기
캐나다	증여자의 자본이득	증여시점 ¹⁾
호주	증여자의 자본이득	증여시점

주: 1)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수증인의 수증재산 처분 시점까지 과세이연 가능. 이때 과세소득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증여자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과 수증인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의 합계임

1. 캐나다

-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시점에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캐나다에서는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무상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음

- 재산의 무상이전 시점에 피상속인이 사망 바로 직전 상속인이나 수증인에게 그 대상 자산을 공정시장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유상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대상 자산이 자본자산이면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단, 배우자 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한해서는 무상이전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생존한 배우자의 사망 또는 양도시까지 과세이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배우자 간 재산의 무상이전의 경우, 상속인 또는 수증인은 배우자인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함

- 자본이득 및 손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면, 이는 기본적으로 자본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지만 처분은 단순한 매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재산의 파손으로 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해외이민, 해외이전, 회사의 해산, 자본자산의 증여 및 상속의 경우도 모두 처분으로 의제하여 자본이득 및 손실 계산시 포함하고 있음
 - 자본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공정시장가격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며 요건 충족시 과세이연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함

- 이와 같이 산정된 자본이득은 집중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그 금액 중 50%만을 과세소득에 합산하며 이는 소득세법상 다른 유형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과 함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됨¹⁰⁶⁾

106) 2000년 2월 28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 75%, 2000년 2월 28일부터 2000년 10월 18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 3분의 2만을 과세소득에 포함함

○ 자선단체에 특정 유형의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0%의 비율이 적용됨

□ 캐나다의 현행 연방소득세법상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소득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음

〈부표 18〉 2013년 캐나다 연방 소득세 세율

(단위: 캐나다달러, %)

과세구간	세율
43,561 이하	15
43,561 초과 ~ 87,123 이하	22
87,123 초과 ~ 135,054 이하	26
135,054 초과	29

2. 호주

□ 호주는 지난 1977년부터 1984년까지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현재 호주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증여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바, 자본이득의 과세시점은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각각 다르게 처리하고 있음

□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향후 해당 재산을 처분시 자본이득 계산에 이용함¹⁰⁷⁾

○ 상속재산에 대한 자본이득 계산에 있어서는 다른 재산들과 다르게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이 일반적인 자본이득세 과세방법을 따름

107) 호주국세청(http://www.ato.gov.au/General/Capital-gains-tax/In-detail/Gifts,-inheritances-and-deceased-estates/Deceased-estate-and-CGT/?default=&page=4#Winding_up_a_deceased_estate)

-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지만 과세는 이연되어서 상속된 재산의 처분시점에서 과세되는 구조임
 - 차후 자본이득세 계산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비용도 자산 취득원가로 가산됨
 - 단,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1985년 9월 20일 이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취득원가를 승계할 수 없으며, 이때 상속인의 취득원가는 상속시점의 공정시장가격임
- 한편,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공정시장가격에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증여시점에서 과세함
- 호주의 자본이득세는 소득세로 분류되며 2013-2014년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음

〈부표 19〉 호주 소득세율

(단위: 호주달러, %)

과세구간	세율
~18,200 이하	0
18,201 이상~37,000 이하	19
37,001 이상~80,000 이하	32.5
80,001 이상~180,000 이하	37
180,001 이상~	45

세법연구 14-01
주요국의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연구

2014년 9월 23일 인쇄

2014년 9월 30일 발행

저 자 안종석 · 송은주 · 정경화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1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ISBN 978-89-8191-722-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